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2022. 3.

정훈 · 권순오 · 이미현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권순오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4급

이미현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4급

목 차

I. 서론	1
II.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 현황	3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및 소득금액 산정	3
가. 주식 등	3
나. 채권 등	13
다. 투자계약증권	17
라.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19
마. 파생결합증권	28
바. 파생상품	31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산정	35
가. 손익통산·결손금 산정 및 공제	35
나. 기본공제	36
다. 세율 및 과세방법	38
3.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42
가. 원천징수 대상·의무자·시기	42
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48
다. 신고대상 정보·의무자·시기	52
4. 기타사항	55
가. 금융투자소득세 의제취득가액	55
나. 증권거래세	57
III.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현황	59
1. 미국	59

가. 자본이득 과세체계	60
나. 자본이득 과세대상의 정의	61
다.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	62
라. 과세대상 행위	63
마. 금융기관 등의 협력 의무	64
바. 증권거래세 등 기타사항	66
2. 일본	67
가. 자본이득 과세체계	67
나. 자본이득 과세대상의 정의 및 과세대상 행위	70
다.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	71
라. 금융기관 등의 협력 의무	74
마. 증권거래세 등 기타사항	74
IV. 시사점	75
1.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측면	75
가. 원천징수	75
나. 신고안내	81
다.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87
라. 금융투자소득세 회피 방지 대응	91
2. 제도 측면	96
가. 시장 간접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항목	97
나. 비과세에서 과세 전환으로 인한 세제 개선 필요항목	101
다. 건강보험료 부과	109
참고문헌	113

표 목차

〈표 II-1〉 기존 대주주 요건	4
〈표 II-2〉 국외 주식 관련 과세규정	6
〈표 II-3〉 과세대상 주식 등	10
〈표 II-4〉 주식 등 소득금액 산정	12
〈표 II-5〉 주식 등의 추계취득가액 적용방법	12
〈표 II-6〉 주식 등 기준시가의 산정	13
〈표 II-7〉 과세대상 채권 등	14
〈표 II-8〉 채권 등 소득금액 산정	16
〈표 II-9〉 채권 등 기준시가의 산정	16
〈표 II-10〉 과세대상 투자계약증권	18
〈표 II-11〉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산정	19
〈표 II-1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20
〈표 II-13〉 과세대상 집합투자증권과 집합투자기구	22
〈표 II-14〉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및 유보가능이익 비교	23
〈표 II-15〉 집합투자증권과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산정	26
〈표 II-16〉 과세대상 파생결합증권	29
〈표 II-17〉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산정	31
〈표 II-18〉 과세대상 파생상품	33
〈표 II-19〉 파생상품 소득금액 산정	34
〈표 II-20〉 소득통산 및 결손금	36
〈표 II-21〉 금융투자소득상품별 기본공제	37
〈표 II-22〉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39
〈표 II-23〉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산식	41
〈표 II-24〉 금융투자상품 및 거주자별 원천징수	46

〈표 II-25〉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	49
〈표 II-26〉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	52
〈표 II-27〉 신고대상 정보 및 신고의무자	54
〈표 II-28〉 의제취득가액	56
〈표 II-29〉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변동	58
〈표 III-1〉 현행 내국세법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59
〈표 III-2〉 자본이득 과세체계 요약	61
〈표 III-3〉 특정 계좌 및 일반 계좌의 비교	70
〈표 IV-1〉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76
〈표 IV-2〉 기본공제적용 계좌의 손익이 역전되는 경우	77
〈표 IV-3〉 해외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 운영 현황 비교	78
〈표 IV-4〉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려운 점	84
〈표 IV-5〉 일본의 특정 계좌 및 일반 계좌의 비교	91
〈표 IV-6〉 증여재산 공제	92
〈표 IV-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95
〈표 IV-8〉 주식형 ETF의 경우	103
〈표 IV-9〉 주식형 ETF의 장외매도 시 증여세 회피	105
〈표 IV-10〉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10
〈표 IV-11〉 이자/배당/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112

그림 목차

[그림 II-1] 현행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의 소득세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40
[그림 III-1] Form 1099-B 사본 A	65
[그림 IV-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82
[그림 IV-2] 주식거래활동계좌 수 변화	86
[그림 IV-3] 키움증권 주식 대체출고 절차	93
[그림 IV-4]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의 괴리율 추이(2021. 9.~2022. 3.)	106

I. 서론

-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측면을 대응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 중대본”)를 구성하여 여러 경제 대응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음¹⁾
 - 경제 중대본에서는 ① 국내외 경제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② 기 발표한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추가적 보완 ③ 창의적이고 전례없는 위기극복 추가 대책 발굴·수립 ④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브리핑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힘
 -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시스템을 갖춰 경제위기 돌파라는 성공적 ‘경제방역’ 수행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려고 함

- 경제 중대본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2020년 6월 「금융세계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함²⁾
 - 추진배경으로 ①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 ②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③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국회 요구를 들고 있음
 - 현행 금융상품의 형태 및 거래방법에 따른 과세와 비과세, 배당·이자 소득 및 양도소득과의 구분 방법, 거래세,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집합투자증권 과세체계 합리화 및 증권거래세 조정을 제시함

- 이러한 금융세계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 4. 29.

2) 관계부처 합동,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계 선진화 추진 방향」, 2020. 6. 25.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는 2020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입법하고 2021년에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기로 계획했었음
 - 그러나 실제 입법 시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³⁾
- 이러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을 앞두고 세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측면의 연구는 확인되지 않음
- 모든 금융상품을 다루는 많은 규정이 필요한 세제여서 과세제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
 - 더구나 기존 손익통산, 비과세의 과세 전환 등 금융투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논의되던 내용이 포함되어 실제 법령화된 과세제도에 관심이 집중됨
 - 반면에 이러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통해 수많은 납세의무가 성립될 것인 데 반해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측면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2월 현재 입법된 금융투자소득⁴⁾ 하에서 납세자들의 용이한 납세협력과 과세관청의 적절한 과세행정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짐
- 주식 등의 전면 과세에 따라 다수의 납세자가 발생하고, 비과세대상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범위가 확대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고려함
 - 반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납세자 대등을 포함한 원활한 납세신고 체계와 발생 가능한 조세회피 등에 대해 고려함
 - 본 연구는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이의 전제가 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세제에 대한 검토도 간략하게 병행함

3)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제6조

4) 본 연구는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에 따른 연구로 향후 개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Ⅱ.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 현황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및 소득금액 산정

가. 주식 등

1) 과세대상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상장·비상장 여부 및 장내·외 거래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포섭되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됨
- 기존에 비과세대상이었던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및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일부 장외거래 양도소득,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일부 장외거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됨
 -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나,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비과세됨⁵⁾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⁶⁾

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됨⁷⁾
-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대주주 요건 판정이 중요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됨
 - 대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을 및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주식 거래 시장별로 상세 요건은 <표 II-1>과 같음

<표 II-1> 기존 대주주 요건

구분					지분율	시가총액		
주주1인+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상장	10억원 이상		
구분	특수관계인 범위						유가증권 (코스피)	1% 이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배 법인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코스닥	2% 이상
대주주	○	○	○	×	코넥스	4% 이상		
최대 주주	○	○	○	○	비상장	일반	4% 이상	
						벤처기업	4% 이상	40억원 이상

주: 지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결정 등에서는 취지를 “이러한 요건을 둔 이유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본이득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⁸⁾ 상장주식의 용이한 증여를 통해 과세부담을 회피하는 점을 고려한 것임

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규정

8)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60 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결정 등

- 금융투자소득세의 국외 주식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은 현행과 동일하나 요건이 일부 변경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양도소득에서는 거주자의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됨⁹⁾
 - 대상 국외주식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의미함
 -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과세물건은 동일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고 있음¹⁰⁾
 - 이러한 규정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국외 주식 과세대상의 납세의무자를 되돌리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과 같이 국외 주식 과세 적용 시 조세조약상 자본이득은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지국 및 투자 대상국에서 모두 과세가 되지 않는 이중 비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변경 시나 입국 시 이전 거주지국의 출국세 또는 자본소득 과세와 연계될 수는 있음

9)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7조의3

10)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50조의6

〈표 II-2〉 국외 주식 관련 과세규정

	~ 2020. 1.	2020. 1.~2022. 12.	2023. 1.~
법 률	<p>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p> <p>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

〈표 II-2〉의 계속

	~ 2020. 1.	2020. 1.~2022. 12.	2023. 1.~
령	<p>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위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p>	<p>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위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p>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p>

〈표 II-2〉의 계속

	~ 2020. 1.	2020. 1.~2022. 12.	2023. 1.~
부 령	-	-	<p>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영 제150조의6에서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3. 법 제8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

주: 법률은 「소득세법», 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령은 「기획재정부령」임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주식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과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뜻함¹¹⁾
 - 이러한 정의는 현행 「소득세법」과 「금융투자소득세법」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개념으로, 신주인수권 및 주식예탁증서(KDR, GDR, ADR) 등이 포함됨
 -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과세대상 자산의 구분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에 주식 등으로 분류되던 회사형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기구로 분리함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과세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소득발생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함¹²⁾
 - 「소득세법」상 양도는 광의의 개념으로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¹³⁾

- 금융투자소득세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 행위에 포섭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됨¹⁴⁾
 -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주식의 차입·상환 행위 자체는 양도로 해석되지 않으며,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음¹⁵⁾
 - 즉, 대차한 주식의 양도 시와 상환 시 주식 부분의 양도차익만이 현행 「소득세법」상 요건(대주주, 장외 등)을 충족하면 과세될 수 있으나, 차입과 상환에서의 차익 목적인 개인의 신용대주거래에 의한 공매도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음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현행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대한 별도의 규

11)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 제1항

12)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8조 제1호

13)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 제 3호

14) 오윤·임동원·문성훈, 「공매도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21. 12.

15) 양도, 서면법규과-468, 2014. 5. 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양도,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 1. 20. 등

정이 없어 비과세 부분이 과세로 전환될 뿐, 기존 「소득세법」과 동일한 형태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표 II-3〉 과세대상 주식 등

구분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등	양도 등	
주식 등의 양도	상장	대주주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주식 등)	
		소액 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장외 거래	일반		양도소득
				상법상 거래		비과세
	비상장	대주주		양도소득		
		소액 주주	일반			양도소득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거래			비과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
국외 주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단, 5년 이상 거주 요건	
공매도(신용대주거래)				불명확 ¹⁾		

주: 1) 공매도 역시 과세대상 행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이는 신용대주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 행위에 대한 것이지 주식의 차입·상환에 대한 과세가 아닌데, 법령상 양도의 정의 및 주식 등의 소득금액 산정에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해석상으로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음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2) 소득금액 산정

□ 소득금액 산정은 기존 비과세대상 소액주주의 거래 등이 과세범위에 포함되었을 뿐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음

○ 특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함¹⁶⁾

- 다만 추계취득가액 계산 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선적용되어, 의제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 또는 추계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됨
 - 의제취득가액이란 취득가액 산정 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뜻함

- 주식 등의 양도 시 소득금액의 산정은 상품의 성격에 상관없이 실제 대가 등을 기준(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이하 “실제이익”이라고 함)으로 산정되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 취득가액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좌별로 통산함¹⁶⁾
 -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뜻함
 - 모든 상품이 3단계의 추계취득가액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상품에 따라 적용받는 추계취득가액의 단계에는 차이가 있음
 - 기준시가는 주식 등의 종류, 상장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따름¹⁸⁾

- 다만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 전 취득가액을 기준(실지양도가액 - 배우자의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증여시점 증여세 산출세액, 이하 “미증여 가정 실제이익”이라고 함)으로 산정되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며, 증여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16)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8 제1항

17)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 13 제3항 제1호

18)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7 제1항 제1호

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를 짐

-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표 II-4〉 주식 등 소득금액 산정

구분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등	양도 등
주식	상장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분류와 관계없이 동일	기존과 동일
	비상장		
신주 인수권	전환 불가능한 기간		
	전환 가능한 기간	실제: 실제이익 추계: 양도가액 - 추계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준시가, 의제취득가액 규정 있음)	
	신주 인수권증서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표 II-5〉 주식 등의 추계취득가액 적용방법¹⁾

구분		추계·결정
주식	상장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비상장	매매사례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신주인수권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주: 1) 기존 「소득세법」과 금융투자소득세에 차이가 없음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표 II-6〉 주식 등 기준시가의 산정

구분	가액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¹⁾	1주당 가액 = Max(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신주인수권	① 전환불가능한 기간 중의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이율로 할인한 가액 - 만기상환금액을 기획재정부령 적정할인율로 할인한 가액 (음수인 경우 0) ② 전환가능한 기간 중의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 Max(①,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 신주인수권증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이외의 경우는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
기타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방법 준용

주: 1)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코스닥·코넥스 주식 포함
 자료: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7,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22

나. 채권 등

1) 과세대상

-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이 직접 투자한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채권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채권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과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을 뜻함¹⁹⁾

- 일반 회사채뿐만 아니라, 향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조건부자본증권 등도 과세대상 채권 등에 포함됨

□ 주식 등과 동일하게 이월과세 규정이 채권에도 적용됨²⁰⁾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과세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소득발생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함²¹⁾

-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 및 사채의 상환도 양도행위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과거 사채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조문만으로는 해석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표 II-7〉 과세대상 채권 등

구분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상환·전환	양도	상환·전환
채권 등	일반사채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채권 등)	불명확
	전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신주인수권부 사채	비분리형					
		분리형	사채	양도소득 ¹⁾	비과세 ²⁾	금융투자소득(주식 등)	
신주인수권							
국외 사채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단, 5년 이상 거주 요건	불명확	

주: 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주식 등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2)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초과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19)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 제2항

20)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6

21)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8조 제1호

2) 소득금액 산정

- 채권의 양도 시 소득금액은 실제 대가 등을 기준(채권등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으로 보유기간별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됨²²⁾
 - 보유기간별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이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기 때문임²³⁾
 - 취득가액의 평가는 개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좌별로 적용함²⁴⁾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주식 등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추계 시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함²⁵⁾
 -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뜻함²⁶⁾
 - 감정가액이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함
 -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뜻함
 -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따름²⁷⁾

- 다만 채권 등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됨

22)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9 제1항

23)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2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13 제3항 제2호

25)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8 제1항

26)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27)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7 제1항 제2호

〈표 II-8〉 채권 등 소득금액 산정

구분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상환·전환	양도	상환·전환
채권 등	비과세 (이자소득은 과세)		실제: 실제이익 - 보유기간이자 추계: 양도가액 - 추계취득가액 - 필요경비 - 보유기간이자 (기준시가 규정 있음)	불명확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표 II-9〉 채권 등 기준시가의 산정

구분	가액
증권시장 거래 채권	Max(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의 최종 시세가액)
이외의 채권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② ① 이외의 채권 등: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처분예상금액

자료: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 17

- 기존에 비과세대상이었던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되어 소득금액 산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일반적인 채권의 소득금액 산정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채권의 소득금액 산정 시 보유기간별 이자 및 할인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할인액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대상 채권의 양도소득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수익상환채권의 중도상환 시 발생한 상환이익(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할증금 등)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예규 등에 따르면 상환이익을 보유기간별 할인액 상당액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아닌 이자소득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데,²⁸⁾ 이를 금융투자소득 적용하에서도

동일하게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음

- 또한 채권 중도 취득의 경우에도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행 시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으나²⁹⁾ 이러한 소득금액 구분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에 대한 쟁점이 가능함

○ 채권의 전환·상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이를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ex, 주식의 시장가치)과 취득가액(ex, 전환사채의 당초 취득가액)의 규정 및 원천징수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주식 등의 양도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다. 투자계약증권

1) 과세대상

□ 현행 투자계약증권의 손익 분배금의 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이외의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음

-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함³⁰⁾
- 투자계약금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과 유사한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함³¹⁾

28) 법규소득 2008-0044, 2008. 11. 17., 소득, 서이46013-11956, 2002. 10. 28. 등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31) 국세청 질의회신, 법인, 법인세과-110, 2011. 2. 15.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손익에 관한 과세 규정은 없어 비과세됨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이 됨
 - 이익 분배로 인한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주식 등, 채권 등과 동일하게 이월과세 규정이 투자계약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³²⁾

〈표 II-10〉 과세대상 투자계약증권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이익 분배	양도	이익 분배
투자계약증권	비과세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2) 소득금액 산정

- 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산정은 원칙적인 규정만 존재하여 양도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이러한 규정은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은 비정형증권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에 분류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정됨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³³⁾,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³⁴⁾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³⁵⁾

3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6

33)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 11

34)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14조 제7항

- 취득가액의 경우 개별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³⁵⁾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³⁷⁾³⁸⁾
- 자본적 지출액에는 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며, 증권거래세 등 또한 포함됨³⁹⁾

〈표 II-11〉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산정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이익 분배	양도	이익 분배
투자계약증권	-	실제 분배금액	실제 이익	실제 분배금액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라.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1) 과세대상

-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⁴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의 신탁형, 투자회사 등의 회사형, 투자합자조합 등의 조합형으로 분류됨

35)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2

36)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2 제2항

37)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38) 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39) 국세청, 『2021 개정세법 해설』, 2021, p. 97.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표 II-1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법적 형태		내용
신탁형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2&ccfNo=3&cciNo=2&cnpClsNo=2#lnbShow>, 검색일자: 2022. 3. 9.

-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분배와 양도 시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분배 시의 이익을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신탁·조합형의 경우에는 그 소득원천에 따라 투자자에게 과세되는 도관과세제도를, 회사형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음⁴¹⁾
 - 다만, 비적격집합투자기구 중 회사형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액공제(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라는 점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과 차이가 있음⁴²⁾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시 이익도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나⁴³⁾ 일부 비과세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중 일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됨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제2호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 주가지수 단순추종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주식형 ETF”)와 「법인세법」 제 51조의2 제1항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의 이익을 이전 사업연도에 모두 배당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비과세함⁴⁴⁾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중 대주주이거나 장외 양도 및 국외 설정된 기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의 주식 양도와 동일하게 소득이 분류됨⁴⁵⁾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와 환매 등을 구분하여 소득이 분류됨
- 분배 시에는 적격과 비적격 집합기구로 나누어 전자는 소득원천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후자는(이전과 달리 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됨
 - 현행과 비교하여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신탁·조합형은 도관과세 및 회사형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됨⁴⁶⁾
 - 환매 등(양도, 기구의 해지·해산 포함)의 경우에는 이전의 비과세·배당소득·양도소득에서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됨

4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및 제4호

45)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6조의2 제5항 제1호

46) 계약형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배당 시 공제됨(「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1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75조의14.)

〈표 II-13〉 과세대상 집합투자증권과 집합투자기구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분배	환매	
환매·분배	적격	주식형 ETF· (전체이익배당)투자회사 ¹⁾		배당소득	금융투자· 배당 소득구분		
		이외					
	비적격	신탁·조합형		도관과세	배당소득		
		회사형		배당소득 (gross-up)			
양도	주식형 ETF· (전체이익배당)투자회사 ¹⁾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회사형	국내 설정	상 장	소액 주주		장내	배당소득
				대주주		장외	양도소득
			비상장				
			역외 설정				
			이외 (역외 설정 포함)				배당소득

주: 1) 금융투자소득 적용 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전체 배당 요건은 없음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유보가능이익금 범위가 현행과 금융투자소득 적용 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짐
 - 적격집합투자기구는 기구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관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전보다 요건이 강화되었음
 - ETF의 지수종목 교체 또는 파생상품 투자이익과 집합투자재산 매매이익이 유보가능이익에서 제외되었으며, 평가이익은 향후 손익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전히 유보가능한 이익임
 - 역외 집합투자기구는 현행 무조건 적격으로 분류되었지만 금융투자소득에서는

무조건 비적격으로 분류됨

- 투자회사 등에 도관성을 적용하는 유사한 규정인 「법인세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유보가능이익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표 II-14〉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및 유보가능이익 비교

	현행 ¹⁾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제51조의2 ²⁾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좌동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무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만 해당
결산·분배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좌동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유보가능 이익금	ETF의 지수종목 교체 또는 파생상품 투자이익	-	-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	좌동	시가평가한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포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매매이익	-	-
	-	-	상법 또는 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유보 가능	좌동	-
위탁·환급	금전 위탁·환급 또는 금전 표시	좌동	
유보·분배 내역 신고	-	있음	
국의 설정 집합투자기구	무조건 적격으로 분류	무조건 비적격으로 분류	

주: 1) 현행 「소득세법」은 적격집합투자기구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실무상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적격집합기구의 용어를 적용하고 있어 이의 개념을 차용함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보가능이익금 비교목적임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2) 소득금액 산정

- 현행 「소득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주식·장내파생상품 등의 비과세 부분이 고려된 과세표준기준가격(이하 “과표기준가격”)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분배에서는 적격은 「소득세법」상 직접 매매 시 비과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채권 제외)을 제외하며, 비적격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전체를 배당으로 분류함
 - 주식형 ETF, 상장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의 경우 적격으로 분류되는 경우 분배되는 금액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며⁴⁷⁾, 이외의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는 과표기준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데⁴⁸⁾ 반해 비적격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원천소득의 비과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음
 - 적격집합투자지구의 환매 등과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양도 시 해당 시점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또는 이후 결산·분배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분배 시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후 과세되지 않은 부분을 가감하여 산정함
 - 다만, 주식형 ETF를 제외한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주식형 이외의 ETF)의 양도 시 실제이익과 과표기준가격 차이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하며⁴⁹⁾, 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정방법에 따름
 - 다만, 환매 등에서 주식형 ETF와 상장투자회사는 양도 시 비과세로 인해 환매 등의 경우에 과표기준가격을 기반으로 기존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최종소지자 과세)가 이루어짐⁵⁰⁾
 - 주식형 ETF나 전체이익배당 상장투자회사는 그 재산이 비과세 부분이거나 이익을 기본배하여 과표기준가격에 반영할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임
- 금융투자소득에서는 기존 비과세대상의 과세 전환으로 일부 과세대상 확대, 과표

4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4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4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5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기준가격이 아닌 기준가격 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적용되는 점과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등의 소득금액 산정이 소득분류 변경에 따라 달라짐

- 상장주식 ETF 및 상장투자회사 등의 양도는 기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장내거래 시 실제 이익, 장외거래 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정됨⁵¹⁾
-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등의 비과세항목의 과세 전환으로 더 이상 기준가격에서 과세되는 부분만을 나타내는 과표기준가격 적용이 필요하지 않음
-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등의 이익이 기존 도관과세 또는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기준가격 차이 및 과세유보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됨 - 이는 기존 소득산정 시 과표기준가격이 기준가격으로 변경되거나⁵²⁾ 과표기준가격과 실제이익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던 양도소득 부분에서 과표기준가격 적용부분이 삭제됨⁵³⁾
- 이외에 현행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대주주 등의 소득금액 산정에서 장외 부분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됨⁵⁴⁾

51)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의17 제3항 제1호 및 제4항

5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의17에서 기준가격 적용부분 모두

5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의17 제4항

5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의17 제3항 제2호

〈표 II-15〉 집합투자증권과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산정¹⁾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분배	환매	분배	환매	
환매·분배	적격	주식형 ETF·(전체이익배당)상장투자회사 ²⁾	분배금액-재외소득(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환매 시 과표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또는 최초설정 시) 과표기준가격	금융투자소득 해당 금액	환매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또는 매수) 직후 기준가격
		이외	Min[결산 시 과표기준가격 - 매수(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시 과표기준가격 ± 과세유보금, 배분된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환매 시 과표기준가격 - 매수(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시 과표기준가격 ± 과세유보금	Min[결산 시 기준가격 - 매수(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시 기준가격 ± 과세유보금], 금융투자소득 해당 금액]	환매 시 기준가격 - 매수(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시 기준가격 ± 과세유보금
	비적격	신탁·조합	소득 구분		실제 이익	
		회사형	실제 이익(gross-up)			

〈표 II-15〉의 계속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분배			환매		
양도	주식형 ETF· (전체이익배당)상장투자회사 ²⁾		-			장외: 양도 시 기준가격 - 매수 (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시 기준가격	
	회사형	국내 설정	상 장	소액 주주	장내	양도 및 매수 시 Min(과표차이, 실제이익)	장내: 실제 이익
				장외	대주주		
			비상장		양도가액-필요경비	장외: 양도 시 기준가격 - 매수(또는 직전 결산· 분배 직후) 시 기준가격 ± 과세유보금	
			역외 설정				
이외의 (역외 포함) 집합투자증권		과표기준가격 - 매수(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시 과표기준가격 ± 과세유보금					

주: 1) 각종 수수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2) 금융투자소득 적용 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전체 배당 요건은 없음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마. 파생결합증권

1) 과세대상

-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상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됨
 - 파생결합증권은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및 원본보장이 되어 있는 연계사채 등은 파생결합증권 정의상 제외됨⁵⁵⁾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⁵⁶⁾
 -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가지수 단순추종 상장지수증권(ETN)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함
 -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지수의 수치와 연계된 권리 증권 또는 증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주가지수 ELW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개별주식 ELW는 비과세함⁵⁷⁾
 - 주가지수 단순추종(레버리지 제외) ETN의 양도 등은 비과세함⁵⁸⁾
 -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요 과세대상은 주가연계증권(ELS)·기타파생연계증권(DLS) 등의 환매 등의 소득과 대부분의 ETN임
 - ELS·DLS 등은 장외에서 양도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환매되는 경우만 과세하고 있음
 - ELB·DLB의 파생결합사채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은 아니나 「소득세법」에서는 파생결합증권과 묶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함⁵⁹⁾
 - 주가지수 단순추종 ETN의 경우에도 만기 청산 시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임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5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의2호

5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

58)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59)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의2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모든 파생결합증권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섭됨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과세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소득발생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함⁶⁰⁾
 - 소득발생 행위를 분배금, 증권의 상환·환매·양도·권리행사·종료 등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ELS·DLS·ETN 등의 부분과 기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던 주가지수 ELW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됨
 - 기존 비과세되던 ELS·DLS 등의 양도행위와 개별종목 ELW, 주가지수 단순추종 ETN 등의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됨
 - ELW의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현행 KOSPI200, KOSDAQ 150 외에 니케이225,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이 가능(지수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의 사전에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⁶¹⁾ 현재 해당 지수를 기초로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은 없음⁶²⁾
- 파생결합사채는 사채의 특성으로 보아 기존 배당소득에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표 II-16〉 과세대상 파생결합증권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상환·청산	양도	상환·청산
파생 결합 증권	ELS·DLS (비상장)		비과세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ELW (상장)	(주가지수 ELW:	양도소득		
		개별종목 ELW:	비과세		

60)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5

6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제3항

62) 금융위기 이전에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서 니케이, 항생지수 ELW를 상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표 II-16〉의 계속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상환·청산	양도	상환·청산
파생 결합 증권	ETN (상장)	국내주식형 (단순추종)	비과세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이외	배당소득			
파생결합사채 ¹⁾ (ELB, DLB 등)			배당소득		이자소득	

주: 1) 「자본시장법령」상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에 충족하지 않는 채무증권이나, 실무상 여타의 파생결합증권과 더불어 다루어지고 있어 표시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2) 소득금액 산정

-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과세대상 변화로 인해 현행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변화가 있음
 - ELS·DLS 등의 양도 시 이익 및 개별종목 ELW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소득금액 산정은 실제 대가 등을 기준(매도가격-매수가격, 이하 “실제 이익”이라고 함)으로 소득금액이 산정됨
 - 일부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산정 시 실제 이익이 아닌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실제 이익이 아닌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별도의 산정방법의 형식으로 소득금액을 규정하는 소득은 주가지수 ELW 행사-종료 시와 ETN 장외거래 시임
 - 주가지수 ELW의 소득금액 산정은 현행과 금융투자소득세의 산정방법이 동일함
 행사-종료 시 실제 이익이 아닌 콜옵션 기준 ELW 행사기준가격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하여 전환비율을 곱한 후 매수가격을 차감하도록 함
 - ETN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서는 장내·외를 구분하여 장내는 실제 이익으로 장외는 기준가격의 증분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함
 - 기존에 ETN 기초자산의 과세-비과세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과세표준기준가격

을 고려하며 이때 직전 결산·분배를 고려한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여타 ETN은 과세유보금을 고려하였음

〈표 II-17〉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산정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상환 or 청산	양도	상환 or 청산
파생 결합 증권	ELS·DLS (비상장)	-	실제이익	실제이익	
	ELW (상장)	(추가)지수 ELW	행사·종료: $\pm(\text{행사기준가격} - \text{행사가가격}) \times \text{전환비율} - \text{매수가격}$ 이외: 실제이익	행사·종료: $\pm(\text{행사기준가격} - \text{행사가격}) \times \text{전환비율} - \text{매수가격}$ 이외: 실제이익	
		개별종목 ELW	-	실제이익	
	ETN ¹⁾ (상장)	국내주식형 (단순추종)	-	상환 시 과표 - 분배직후 과표	장내거래: 실제이익
이외		양도 및 매수 시 Min(과표차이, 실제이익) \pm 과 세유보금	상환 시 과표 - 분배 직후 과표 \pm 과세유 보금	장외거래: 양도 시 등의 기준가격 - 매수 시 기준가격	

주: 1)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 산정은 분배하는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산정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바. 파생상품

1) 과세대상

-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인 파생상품은 일부 국내외 상장 또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임⁶³⁾

6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 파세대상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대표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코스피·코스닥 지수 관련이나 산업·배당 지수 선물·옵션을 대상으로 함
 -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포함됨
 - 장외파생상품은 차액 현금결제와 계약종료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특정 자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CFD(Contract for Differences)를 의미함
 - 장외파생상품인 이 CFD의 기초자산은 외국법인을 포함한 주식 등 및 외국을 포함한 증권시장 등의 대표종목에 기반하여 산출된 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임
 - 국내외 시장의 대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청산되는 증권과 증서가 포함되는데 이는 ELW로 앞의 파생결합증권에서 기술하였음
 - 따라서 개별주식·금리·통화·상품 등의 선물·옵션, (현실에서는 드물지만)일정 부분의 장외파생상품, CFD 이외의 스왑은 비과세함
 - 선물·옵션 등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과세 여부와 연계되어 비과세하며, 스왑은 총수익스왑(TRS)인 CFD를 별개로 규정하는 있는 것⁶⁴⁾ 이외에는 「자본시장법」 상 스왑 규정⁶⁵⁾을 「소득세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음
- 파생상품의 성격을 나타내더라도 이자·배당 소득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배당 소득으로 분류되는데,⁶⁶⁾ 시행령에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⁶⁷⁾
- 이 규정은 이자·배당 소득과 (외화)파생상품 간의 소득 분류를 통한 조세회피 상품 설계를 배제하기 위한 것임
 - 첫 번째 경우는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① 이자·배당 관련 상

6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66)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

6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26조의3 제5항

품과 파생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동일하면서 ②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이자·배당 부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③ 이자·배당 등의 소득과 파생상품 이익 지급자가 계약당사자로 동일하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 파생상품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로 ① 이자·배당 관련 상품과 파생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사실상 동일하면서 ②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이자·배당부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③ 파생상품의 확정 이익이 이자·배당 소득보다 크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 이자·배당부상품이 파생상품 계약 이행을 위한 질권으로 설정되거나, 금전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의 파생상품소득은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대상을 포함함

- 파생상품소득금액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파생상품⁶⁸⁾의 거래 또는 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선물·옵션·스왑과 향후 「자본시장법」상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률에서 대상범위에는 포함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장내·외 및 국내·외 모든 파생상품이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됨

- 「자본시장법」에서는 선물·옵션·스왑의 파생상품 정의에서 파생결합증권과 신주 인수권증서(지분증권)는 추가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제하고 있음⁶⁹⁾

〈표 II-18〉 과세대상 파생상품

파생상품			현행(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선물(선도)· 옵션	장내	국내	주가지수 기초자산: 양도소득 -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 코스닥 150 선물·옵션 - KRX 300 선물 - 산업·배당 지수 선물 -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	금융투자소득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표 II-18〉의 계속

파생상품			현행(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선물(선도)· 옵션	장내	국내	기타: 비과세 - 개별주식 선물·옵션 - 채권금리(국채)선물 - 통화 선물·옵션 - 상품(돈육, 금) 선물	금융투자소득
		해외	양도소득	
	장외	주가지수 기초자산(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 양도소득		
스왑	비과세(규정 없음) 다만, 국내외 주식·지수ETF·지수ETN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CFD): 양도소득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2) 소득금액 산정

- 소득금액 산정은 기존 비과세 파생상품이 과세범위에 포함되면서 각 상품의 성격(선물·옵션·스왑)별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과 차이가 없음

〈표 II-19〉 파생상품 소득금액 산정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파생 상품 ¹⁾	선물(선도)· 옵션	장내	국내	선물·옵션: $\pm(\text{결제가격}-\text{거래약정가격}) \times \text{거래승수}$ 또는 옵션의 권리행사 시 $\pm(\text{행사가준가격}-\text{행사가격}) \times \text{거래승수}$ 주가지수 기초자산 기타: -	상품별로 기존과 동일
			해외		
		장외	상품별로 국내 장내와 동일		
스왑				CFD: $\pm(\text{결제가격}-\text{거래약정가격})-\text{지급배당}$	

주: 1)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산정

가. 손익통산·결손금 산정 및 공제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분류 내에서 소득통산이 가능하며,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음
 - 현행 양도소득은 분류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도록 하여, 주식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지수ELW)은 소득이 통산됨⁷⁰⁾
 -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익은 손실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산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결손금의 이월은 적용되지 않음
-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각 과세기간의 직전 5년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결손금으로서 이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됨⁷¹⁾
 - 결손이 반영하는 경우 기본공제 분류에 따른 분류 내에서 먼저 공제하고 이후 다른 기본공제 분류와 통산함⁷²⁾
 - 다만, 결손금 중에서 파생상품은 초과손실에 대해 위탁증거금 등의 금액을 한도로 결손금이 반영됨⁷³⁾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함⁷⁴⁾

70)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71)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4

7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9 제1항 제2호 및 제3호

7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10

7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5 제1항

- 전기에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그룹별로 나누지 않고 이월결손금을 합산하여 국내상장주식 등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그룹의 소득부터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 즉 최초 결손금 발생 시에는 기본 공제금액 그룹별로 결손금을 산정하나, 이월된 후에는 금융투자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표 II-20〉 소득통산 및 결손금

	현행		금융투자소득	
	소득통산	결손금 이월	소득통산 ²⁾	결손금 이월 ³⁾
주식등	구분내 양도차익 간 가능	×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	×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양도차익은 주식과 통산			
파생결합증권	구분내 양도차익 간 가능			
파생상품 ¹⁾				

주: 1) 위탁중거금 등을 한도로 결손금에 반영되는 초과손실 제한 있음
 2) 기본공제 분류에 따라 분류 내에서 먼저 통산함
 3)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5천만원 기본공제 적용 소득에서 먼저 공제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나. 기본공제

-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그룹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함
 -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 그룹은 주식과 파생상품으로 분류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비상장주식·국외주식 양도분과 파생상품(주식지수ELW 파생결합증권 포함)을 각 개별 그룹으로 분류함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각 기본 공제금액 그룹별로 구분하여 연간 5천만원 및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함⁷⁵⁾

-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 장내양도 소득금액,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K-OTC 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특정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소득금액임
- 특정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 적격집합투자기구이면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니며,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주식형 ETF·상장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기구임⁷⁶⁾
-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금융투자소득 외의 금융투자소득은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함
- 각 금융투자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⁷⁷⁾

〈표 II-21〉 금융투자소득상품별 기본공제

			현행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분류대상	250만원 분류대상
주식등	상장	장내	250만원	○	
		장외			○
	비상장	K-OTC		○	
		이외			○
채권 등			-		○
투자계약증권			-		○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중 대주주 등		주식에 합산	○ ¹⁾	○
	이외		-		

75)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8

76)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26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48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59조의13제1항

77)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5 제3항

〈표 II-21〉의 계속

		현행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분류대상	250만원 분류대상
파생결합증권	주가지수ELW 이외	-		○
	주가지수ELW	250만원		○
파생상품				○

주: 1)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다. 세율⁷⁸⁾ 및 과세방법

1) 세율 및 종합 또는 분류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에서 금융투자소득세율로 일원화됨
 - 현행 금융투자에 대한 세율은 배당소득인 경우 14%의 원천징수⁷⁹⁾와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⁸⁰⁾ 주식은 보유형태·주식발행법인의 구분 및 거래 방법에 따라 10~30%의 세율이, 일부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20%의 세율이 적용됨⁸¹⁾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함⁸²⁾

78) 보고서 작성일 현재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별도 고려하지 않음

79)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8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8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82)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9

〈표 II-22〉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현행	금융투자소득
주식 등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이외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중소기업 주식		10%	
	장외 거래 등 기타		20%	
	국외 주식	중소기업	10%	
		이외	20%	
	소액주주 장내거래·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			-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중 대주주 등		주식과 동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이외	주식형 ETF 양도 등	-	
		이외	(배당소득) 분리과세: 14% 종합과세: 누진세율	
파생결합증권	개별종목ELW, 주식형ETN		-	
	이외		(배당소득) 분리과세: 14% 종합과세: 누진세율	
	주가지수ELW		20%	
파생상품	주가지수 기초자산 등		20%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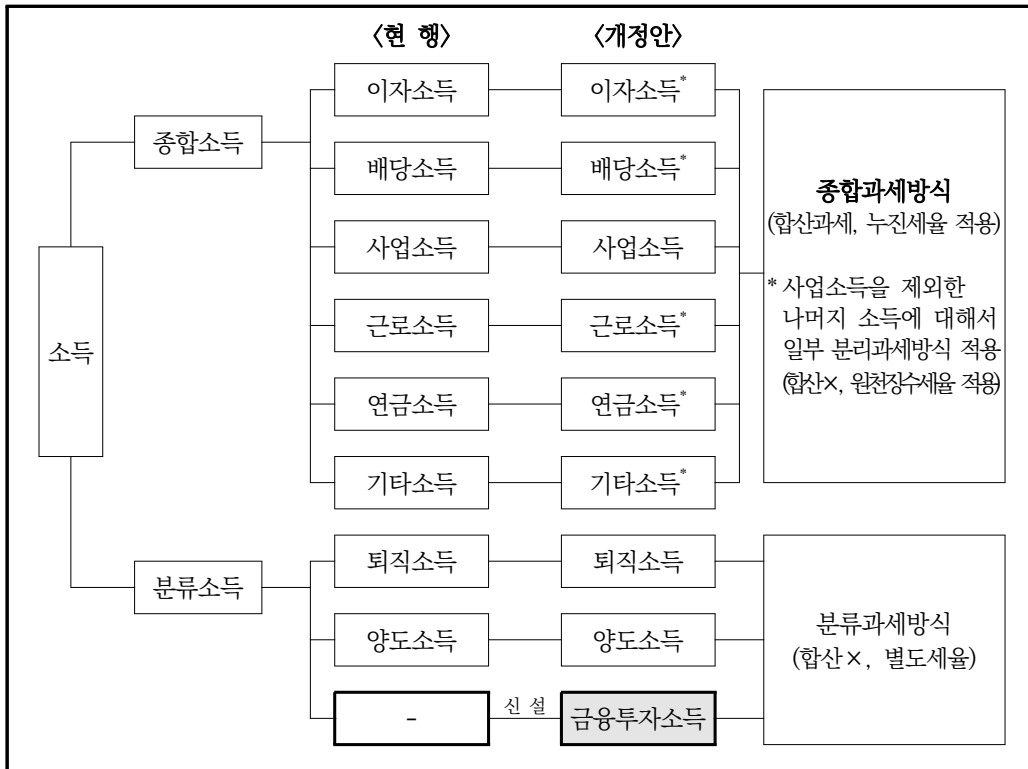
주: 지방소득세 별도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이나, 금융투자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함
- 현행 금융투자에서의 소득은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이자·배당 합산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며,⁸³⁾ 양도소득은 종합
소득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됨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합산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분류과세하며, 종합과세 대상 중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일부 분리과세되고 있음⁸⁴⁾

○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등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분류과세됨⁸⁵⁾

[그림 II-1] 현행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의 소득세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자료: 송병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20. 11., p. 100.

8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84) ①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② 분리과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며 ③ 분류과세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한하여 별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별도의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임

85)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4 제1항

2) 감면 적용 시 기본공제 반영방법

- 소득세 감면 적용 시 현행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포섭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기본공제 적용이 감면대상과 감면대상 이외의 소득 적용에서 공제금액 확대에 따라 취지가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대상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함⁸⁶⁾
 - 반면에 금융투자소득에서는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나눈 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과 다른 조세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액을 산출함⁸⁷⁾
 -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서 직접 차감하여 사실상 현행과 동일함

〈표 II-23〉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산식

$$\text{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times \frac{B - C}{D} \times E$$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자료: 「소득세법」 제87조의20 제1항

86)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87)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0 제1항 및 제2항

3.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가. 원천징수 대상·의무자·시기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각 반기별로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계좌보유자별 합산 시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그룹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1) 원천징수 대상소득

-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으로,⁸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사인 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됨
 -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됨⁸⁹⁾
 -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의 소득⁹⁰⁾
 - 「금융투자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기간까지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 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소득⁹¹⁾
-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⁹²⁾ 이때에 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88)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84조의5 제2항

89)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84조의5 제1항 및 제2항

90)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03조의2 제12항

91)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203조의4 제5항. 원천징수배제 신청

92)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29조 제1항 제9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배제됨

-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그룹별 합산 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그룹별 합산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뜻함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는 항목 중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던 국내 원천소득과 주식·출자지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임
 - 비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0%와 실제이익(지급금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됨
 - 기존 세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원천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구체화한 점임⁹³⁾
 -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이 이에 해당하며, 국내주식형 ETF 및 전체배당 상장 투자회사, 비적격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인한 손익, 주가지수 ELW로부터 발생한 이익 및 주가지수 단순추종 ETN의 양도 이익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과세 형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식 등의 양도 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임
 - 비거주자가 소급 5년간 계속하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5% 미만 보유한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비거주자 주식 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9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78조의13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논리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임

2)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임
 - 복수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 적용금액을 하나의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 등에 안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별 하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음⁹⁴⁾
 - 원천징수세액의 과다징수 방지 및 대형금융회사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납세자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여러 개이더라도, 납세자별 기본공제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 관리하도록 함
 - 납세자는 반기의 말일까지 직접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일 이후의 동일 과세기간 동안은 변경이 불가능함⁹⁵⁾
 - 법률상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기본공제 미신청 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됨

3)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고, 동일한 기간까지 계좌보유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⁹⁶⁾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존재함

9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03조의2

95)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03조의2 제6항

96)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48조의2, 제148조의3

- 원천징수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를 의미하며,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를 의미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환급 의무가 발생함⁹⁷⁾
 -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환급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환급세액이 확정되면 계좌보유자에게 미리 환급해 주는 것으로 해석됨
 -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반기별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함⁹⁸⁾
 -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⁹⁹⁾
- 세액 확보 목적상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기간 중,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음¹⁰⁰⁾
- 즉 금융회사 등은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관리를 통해 산출된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인출만을 허용할 수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 기존의 원천징수 규정과 동일하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¹⁰¹⁾

97)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03조의3
 98)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203조의5 제2항
 99)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64조 제1항
 100)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48조의2 3항
 101)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56조 제1항

〈표 II-24〉 금융투자상품 및 거주자별 원천징수

구분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주식 등	장내		×	△ (유가증권 양도소득) ¹⁾	△ (유가증권 양도소득) ¹⁾		
	장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채권 등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²⁾			
투자계약증권(양도)			(비과세)				
집합투자 증권 및 집합투자 기구	적 격	계 약 형	양도	주식형 ETF	× (비과세)	○ ³⁾ (금투소득)	○ (배당소득)
				이외			
			환매		○ (배당소득)		
		분배					
		회 사 형	양 도	장 내	전체이익 배당		
	이외				대주주 등	×	
	소액주주			○ (배당소득)			
	장외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환매		○ (배당소득)		○ (배당소득)		
	분배				○ (배당소득)		
비 적 격	계 약 형	양도		△ (소득원천별 과세)	○ (유가증권 양도소득) ²⁾		
		환매			○ (배당소득)		
		분배					
				○ (배당소득)			

〈표 II-24〉의 계속

구분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집합투자 증권 및 집합투자 기구	비 적 격	회 사 형	양도	대주주 등 ×	○ (금투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¹⁾	
			소액주주 ○ (배당소득)				
			환매	○ (배당소득)			
			분배	○ (배당소득)		○ (배당소득)	
	역외 설정		양도	○ (배당소득)	N/A	○ (금투소득)	-
			환매				
		분배	○ (배당소득)				
파생결합 증권	ELS·DL S (비상장)	양도	× (비과세)		○	○	
		상환·청산	○ (배당소득)				
	ELW (상장)	(주가)지수 ELW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금투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개별종목 ELW	× (비과세)			○ (배당소득)	
	ETN (상장)	국내주식형의 양도	× (비과세)		○ (배당소득)	×	
		이외	○ (배당소득)			○ (배당소득)	
파생상품				×	× (비열거)	×	

주: 1) 지분율 25% 이상만 과세대상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됨
 2)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3)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분배 중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¹⁰²⁾

1) 예정신고

- 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별 거래내역 및 보유내역 제출의무에 따라, 현행과 금융투자소득세 신고의무 대상에 차이가 있음
 - 기존에는 과세대상 주식 등(국외 주식 제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손익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예정신고의무가 있었으나,¹⁰³⁾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음¹⁰⁴⁾
- 예정신고 기한에 있어서도 기존 세법과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예정신고 기한이 단축되었다는 점임
 - 기존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했으나,¹⁰⁵⁾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¹⁰⁶⁾
 - 기존 세법에서 부담부증여 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의 신고기한을 3개월로 둔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인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타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됨

102) 삼일아이닷컴,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소개합니다」, http://www.samili.com/weekly/weekly_view.asp?idx_no=37480, 검색일자: 2021. 10. 15.

103) 「소득세법」 제105조2 제1항 제2호

104)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2조의21

105) 「소득세법」 제105조2 제1항 제3호

106)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2조의21 제2항 제3호

〈표 II-25〉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

구분				신고납부기한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회사 원천징수 소득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 등			× (비과세)	
	투자계약증권(양도)			× (배당소득) ¹⁾	
	집합 투자증권 및 집합 투자기구	적격	계약형	양도	× (배당소득) ¹⁾
				환매	
				분배	
		회사형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²⁾	
			환매	× (배당소득)	
			분배	× (배당소득)	
	비적격 ³⁾	계약형	양도	× (소득원천별 과세)	
			환매	× (배당소득)	
		회사형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²⁾	
		환매	× (배당소득)		
파생결합증권			× (비과세)		
파생상품			× (신고대상 아님)		
이외	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않은 소득			위 금융회사 원천징수 소 득과 동일하게 예정신고 합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 1) 다만 주식형 ETF의 양도는 배당소득이 아닌, 비과세대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음

2)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과 동일하게 취급됨

3)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는 현행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별도 표기하지 않음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 있거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기존 양도소득과 차이가 없음¹⁰⁷⁾
 - 예정신고 시 제출의무가 있는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해당 금융상품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또는 금융투자업자 발급 거래내역서, 양도비 등 명세서 등
 - 만약 예정신고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결손금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에 따른 산출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됨
 -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 기본공제) × 20%(3억원 초과분 25%) - 기신고 예정신고 산출세액

2) 확정신고

-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현행과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는 납세행정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을 통한 금융투자소득만을 보유한 자가 금융투자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손금액이 확정됨¹⁰⁸⁾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예정신고 의무가 존재하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경우

107) 상동

108)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3 제3항 제3호

는 제외됨

- 또한 국세청 채움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이 모두 제공되므로, 원클릭으로 신고가 종결됨¹⁰⁹⁾
 - 현재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먼저 신고대상 상품을 선택하고 계산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대상 및 금액을 확인하고 저장하는 절차 등을 모두 거쳐야 함

-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함¹¹⁰⁾
 -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대상임
 - 다만 금융회사 등의 거래내역이 전부인 자는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금도 자동 확정되므로 확정신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금융회사 등의 환급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손익통산으로 추가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확정신고 시 제출의무가 있는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서류는 기존과 차이가 없음
 - 해당 금융상품 매수·매도 계약서 사본(금융회사 등을 통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 한 거래내역서)과 양도비 등의 명세서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조회요구 문서 또는 세액 결정·경정 통지서 사본(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계산명세서)

109) 관계부처 합동,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2020. 6. 25., p. 12.

110)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30

- 필요경비 불산입 명세서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표 II-26〉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

구분	신고납부기한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회사 원천징수 소득	이외	금융회사 원천징수 소득	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	다음연도 5/1 ~ 5/31		× (신고대상 아님)	다음연도 5/1 ~ 5/31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다음연도 5/1 ~ 5/31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순위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금융투자결손 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해당없음		× (신고대상 아님)	
금융투자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는 자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음연도 5/1 ~ 5/31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다. 신고대상 정보·의무자·시기

-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함¹¹¹⁾

111)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50조의7 제2항 제3호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① 기본공제에 관한 정보 ②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보유내역 ③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존재함
 -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¹¹²⁾
 - 기본공제 전체 한도가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국세청 및 금융회사 등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가 용이함¹¹³⁾
 -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 등이 정기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상품별 거래내역 및 보유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함¹¹⁴⁾
 - 기존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의 제출의무만 존재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제출대상 금융상품 및 제출내용이 확대되었음
 - 타 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함¹¹⁵⁾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은 국세청장이 요청 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¹¹⁶⁾
 -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증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투자 관계단체¹¹⁷⁾와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등을 뜻함

11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03조의2 제7항

11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03조의2 제8항~9항

11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25의2

115)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64조 제1항 제9호

116)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74조의2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 각호

- 사후적으로 신고 내용의 탈루 및 거래명세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과세관청 등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을 법으로 정함¹¹⁸⁾

〈표 II-27〉 신고대상 정보 및 신고의무자

구분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신고대상정보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신고대상정보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적격 집합 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이익금과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집합 투자기구	매년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신설된 규정)			기본공제 관련 정보	금융회사 등	즉시통보
금융투자 상품 내역	파생상품 또는 장외매매거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증개하는 경우의 거래내역	금융투자업자	거래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명세서 (대상이 확대됨)	금융회사 등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10일
	-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명세서		매년 2월 10일까지
	상장법인 주식의 거래내역	금융투자업자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과세에 필요한 자료 (대상이 확대됨)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 (한국예탁원, 거래소 등)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금융회사 등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식 등 양도차익 신고적정성	신고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관할 세무서장 등의 요청시	현행과 동일		

주: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7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255조의2

118)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5 제6항

4. 기타사항

가. 금융투자소득세 의제취득가액

- 금융투자소득은 새로운 과세로 인해 기존의 비과세 기간 동안의 미실현이익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음
 -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므로 이전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가액 등이 본래의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례규정임
 - 주식 등의 경우 기존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 2022년말 최종 증가임¹¹⁹⁾
 -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행위가 장내 매도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K-OTC 매도는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가 이루어져야 함
 - 집합투자증권 양도의 경우 상장된 주가지수 단순추종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나 투자회사(대주주 제외)는 2022년말 최종 증가를 적용하며, 이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존 과세표준기준가격 증분을 차감한 가격임
 - 집합투자기구 분배의 경우 상장된 주가지수 단순추종 ETF, 투자회사와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2022년말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반영한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나 기존 과세유보금을 가감하는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
 -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존 비과세인 주가지수 단순추종 ETN은 2022년말 최종 증가로 이외의 ETN은 2022년말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반영한 최종시세가액으로 적용함
 - 다만, 채권 등의 양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전체 이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의 대주주 보유분 양도, (투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비상장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환매·해산 등, 파생결합증권 중 개별종목 ELW 양도, 파생상품 중 국내의 장

119)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14

내 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인 파생상품과 CFD 이외의 스왑 등의 양도에는 의 제취득가액 적용 규정이 없음

〈표 II-28〉 의제취득가액

구분				의제취득가액 산정		
				양도	분배	
주식 등	상장주식 (신주인수권 포함)	소액주주	장내거래		'22년 종료일 증가	
			장외거래	포괄전 이전·교환		
				이외		
	대주주			-		
	비상장주식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22년 종료일 증가	
		이외			-	
대주 거래				-		
채권 등				-		
투자계약증권				-		
집합투자 증권·기구	상장	주식형 ETF			'22년 종료일 증가	'22년 종료일 기준 가격 - 과세표준 증 분(매수 또는 직전 결산 - 분배 시)
		투자회사	대주주	전체이익 배당	0	-
				이외		
		이외	전체이익 배당	'22년 종료일 증가	'22년 종료일 기준 가격 - 과세표준 증 분(매수 또는 직전 결산 - 분배 시) ± 과세유보금	
	이외					
	이외의 ETF (주식형 레버리지 포함)		비적격	'22년 종료일 종 가 - 과표기준가 격 증분	-	
	비상장		적격		-	'22년 종료일 기준 가격 - 과세표준 증 분(매수 또는 직전 결산 - 분배 시) ± 과세유보금
			비적격	-		
역외 설정				-		

〈표 II-28〉의 계속

구분		의제취득가액 산정			
		양도	분배		
파생결합 증권	ELS·DLS		-		
	ELW	(주가)지수 ELW			
		개별종목 ELW			
	ETN	국내주식형(단순추종)	최종시세가액		
		이외	최종시세가액 - 과표기준가격 증분		
파생상품	선물(선도) - 옵션	장내	국내	주가지수	-
			기타		
		해외			
	장외				
	스왑	CFD			
		이외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나.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에 대한 양도 시 양도금가액 등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세임
 - 주식 및 지분의 양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형태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 금융투자업자,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됨
 - 통상적인 거래소를 통한 양도의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를 하여 납부함¹²⁰⁾
 - 세율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한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¹²¹⁾
 - 예를 들어, 2022년 유가증권시장 양도 주권은 법률에서 0.43%로 정하고 있으나,

120) 「증권거래세법」 제9조

121) 「증권거래세법」 제8조

시행령에서 0.08%로 경감하고 있음¹²²⁾

-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에 한하여 한국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은 농어촌특별세 0.15%의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²³⁾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더불어 증권거래세 조정을 계획하였으며¹²⁴⁾ 이후 입법되었음
 -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유가증권 시장의 보통 주권 기준 0.10%에서 2023년부터 비과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 양도손실 발생 시 과세되는 점과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근거로 세수 중립을 위해 단계적 인하를 제시함
 - 다만, 유가증권시장 보통 주권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0.15%의 세율을 유지함¹²⁵⁾

〈표 II-29〉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변동

(단위: %)

		2019. 6. 3. ~2020. 12. 31.	2021. 1. 1. ~2022. 12. 31.	2023. 1. 1.~	
법정세율(법률)		0.45	0.43	0.35	
탄력세율 (시행령)	유가증권	보통 주권· 투자회사 주권	0.10 (0.15)	0.08 (0.15)	- (0.15)
		ELW·ETF·ETN	-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0		
	K-OTC		0.25	0.23	0.15
	장외거래		0.45	0.43	0.35

주: 괄호 안은 농어촌특별세임
자료: 저자 작성

12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12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24) 관계부처 합동,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 6. 25.

125)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 (법률 제18589호 시행 2023. 1. 1.)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대통령령 제32431호 시행 2023. 1. 1.)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현황¹²⁶⁾

1. 미국

- 내국세법 제61조(a)에서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상품과 관련된 소득을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s)’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보아 개인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음¹²⁷⁾
- 투자수익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뜻하며, 자본이득은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뜻함
- 금융상품별 과세방식은 <표 Ⅲ-1>과 같음

〈표 Ⅲ-1〉 현행 내국세법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구분	과세방법	적용세율
자본이득	단기자본이득: 종합과세	소득세 누진세율
	장기자본이득: 분리과세	0%, 15%, 20%
이자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누진세율
배당소득	개인이 받는 적격배당금: 분리과세	0%, 15%, 20%
	그 외: 종합과세	소득세 누진세율

자료: IBFD, “Investment incom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us_s_1.&refresh=1641878461868%23gthb_us_s_1.6., 검색일자: 2022. 1. 11.

126) 해외 사례는 기존 조사가 존재하여 미국과 일본만 조사하였으며, 이외의 해외사례는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를 참조하였음

127) IRC § 61(a)

- 다만 2013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 Tax)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순투자소득세가 추가 부과됨¹²⁸⁾
 - 금융상품 및 기타 투자자산과 관련된 소득이 법정기준금액(ex. 단일세대: 2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추가소득세가 부과됨¹²⁹⁾

가. 자본이득 과세체계

- 현행 세법상 자본이득 과세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①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방식이 상이함 ② 분류과세하지 않고 투자 수익과 동일하게 종합과세함 ③ 투자 목적의 자산이라면 금융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자본이득 과세대상에 포함됨 ④ 손익의 통산 및 결손의 이월공제 허용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됨¹³⁰⁾
 - 대부분의 자본이득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으나, 분리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0%, 15%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함
- 타 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하지 않고,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¹³¹⁾
 - 미국 「소득세법」은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일반적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으며 열거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음
-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소유 및 사용하는 거의 모든 자산을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함¹³²⁾

128) IRC § 1411

129) IRS, "Find out if Net Investment Income Tax applies to you," <https://www.irs.gov/individuals/net-investment-income-tax>, 검색일자: 2022. 1. 12.

130) IRC § 1(h)

131) IBFD, "Investment incom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us_s_1.&refresh=1641878461868%23gthb_us_s_1.6., 검색일자: 2022. 1. 11.

132)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결손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순손실을 타 소득에서 합산 가능하게 함
 - 순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년 3천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¹³³⁾

〈표 III-2〉 자본이득 과세체계 요약

항목	내용
과세방법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
과세표준 ¹⁾	(양도가액 - 추정장부가액 - 전기이월 순자본손실) - 기본공제
이월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제한 없이 허용
기본공제	장기자본이득의 경우 세대별 과세소득에 따라 비과세(0%의 세율 적용)됨 독신: 40,400달러 부부합산: 80,800달러 세대주: 54,100달러
세율	1년 이하 단기 보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별 누진세율(10~37%) 1년 초과 장기 보유: 감면세율 적용(0%, 15%, 20%)

주: 1) 이후 개인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편집, 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검색일자: 2022. 1. 17.

나. 자본이득 과세대상의 정의

- 내국세법 제1221조(a)에서 과세대상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열거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투자 목적의 모든 자산을 자본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¹³⁴⁾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사업용 투자자산, 저작권과 같은 개인의 창작물, 정부 발행 특정 간행물, 파생상품 딜러의 파생금융상품, IRS 규정에 따른 특정 헷지 거래 등임

133) 상동

134) IRC § 1221(a)

- 다만 일부 주식 및 채권도 자본손익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¹³⁵⁾
 - 합병, 분할 등 기업재편을 초래하는 기업 간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 동일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개인 간, 개인과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 채권 및 우선주의 전환권에 따른 채권의 주식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
 -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본이득

다.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

- 자본손익에 대한 과세표준은 자본자산의 양도로 실현된 가액(Amount realized from the sale)에서 수정장부가액(Adjusted basis)을 뺀 양도차익에서 전기이월 순자본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계산함¹³⁶⁾
 - 자본자산의 구별 없이 전체 자본자산의 손익을 합산함
 - 전기이월 순자본손실이 있을 경우 장기자본이득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손실을 단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함
 - 전기이월 순자본손실을 차감한 이후의 계산방식은 보유기간에 따라 상이함
 - 장기자본이득: 비과세 기준금액(예: 독신일 경우 40,400달러)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장기자본이득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분리과세함
 - 단기자본이득: 비과세 기준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함
- 양도로 실현된 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및 수령자산의 공정가치,

135)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136) 상동

양수자의 채무 인수액 등을 포함함¹³⁷⁾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판매수수료, 상환수수료 등의 지출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령한 양도대금에서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실현 가액으로 함¹³⁸⁾
 - 즉 '양도로 실현된 가액 = 양도대금(현금, 수령자산의 공정가치, 양수자의 채무인수액) - 양도비용(판매수수료, 상환수수료)'임

□ 수정장부가액은 자본자산의 양도(매각, 교환 등) 시점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필요한 조정을 반영한 가액임¹³⁹⁾

-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중개비 및 수수료와 같은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매입 이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공정시장가치 등을 수정장부가액으로 함

라. 과세대상 행위

□ 자본이득의 과세대상 행위는 매각 및 교환(Sale or Trade) 등으로 포괄할 수 있음¹⁴⁰⁾

- 내국세법상 매각은 광의의 개념으로 현금이나 저당권, 어음 또는 기타 지불약속 등을 대가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교환이란 다른 자산이나 용역을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매각과 동일하게 과세됨¹⁴¹⁾
 - 따라서 채권이나 어음의 만기상환 역시 광의의 개념으로 과세대상 행위에 포함됨
 - 가치가 없어진 주식 및 채권 등은 과세연도 말에 매각된 것으로 간주함

137) IRC § 1001(b), Reg § 1.1001-1(a)

138)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139) 상동

140)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25.

141)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 실질상 자본자산의 처분이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거래형태에 큰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대체취득,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이전 등
- 앞서 언급했듯이 전환권에 따른 주식전환 등은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건부증권 등의 주식전환 행위는 과세대상 행위로 볼 수 없음

마. 금융기관 등의 협력 의무

- 자본이득에 대하여 별도의 원천징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소득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금융기관 등 중개인을 통하여 주식, 채권, 옵션, 선물 등을 매각 또는 교환한 경우, 해당 중개인은 각 거래마다 Form 1099-B를 작성하여 과세연도 종료 후 익년 2월 15일까지 소득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본은 익년 2월 28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¹⁴²⁾
 - 중개인이 제출하는 Form 1099-B는 소득자의 수입에 대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Form 1099-B 제출의무가 있는 중개인에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채권의 발행 및 매각 등을 주업으로 하는 브로커 등도 포함됨¹⁴³⁾
 - 중개인은 관련 서식에 소득자가 매각한 금융자산의 양도 및 취득일자, 수입(Proceeds), 취득원가 및 관련 비용(Cost or other basis) 등의 기초자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 서식은 [그림 III-1]과 같음

142) IRS, "2021 General Instructions for Certain Information Returns," p. 26.

143)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99b>, 검색일자: 2022. 1. 17.

[그림 III-1] Form 1099-B 사본 A

7979 <input type="checkbox"/> VOID <input type="checkbox"/> CORRECTED		Applicable checkbox on Form 8949		OMB No. 1545-0715		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
PAYER'S name, street address,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country, ZIP or foreign postal code, and telephone no.				2022 Form 1099-B		
		1a Description of property (Example: 100 sh. XYZ Co.)				Copy A For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File with Form 1096. For Privacy Act and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see the 2022 General Instructions for Certain Information Returns.
PAYER'S TIN		1b Date acquired		1c Date sold or disposed		
RECIPIENT'S TIN		1d Proceeds \$		1e Cost or other basis \$		
RECIPIENT'S name		11 Accrued market discount \$		1g Wash sale loss disallowed \$		
Street address (including apt. no.)		2 Short-term gain or loss <input type="checkbox"/> Long-term gain or loss <input type="checkbox"/> Ordinary <input type="checkbox"/>		3 Check if proceeds from: Collectibles <input type="checkbox"/> QOF <input type="checkbox"/>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country, and ZIP or foreign postal code		4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5 Check if noncovered security <input type="checkbox"/>		
Account number (see instructions)		6 Reported to IRS: Gross proceeds <input type="checkbox"/> Net proceeds <input type="checkbox"/>		7 Check if loss is not allowed based on amount in 1d <input type="checkbox"/>		
2nd TIN not. <input type="checkbox"/>		8 Profit or (loss) realized in 2022 on closed contracts \$		9 Unrealized profit or (loss) on open contracts—12/31/2021 \$		
CUSIP number		10 Unrealized profit or (loss) on open contracts—12/31/2022 \$		11 Aggregate profit or (loss) on contracts \$		
FATCA filing requirement <input type="checkbox"/>		12 Check if basis reported to IRS <input type="checkbox"/>		13 Bartering \$		
14 State name	15 State identification no.	16 State tax withheld \$				

Form **1099-B** Cat. No. 14411V www.irs.gov/Form1099B Department of the Treasury - Internal Revenue Service
Do Not Cut or Separate Forms on This Page — Do Not Cut or Separate Forms on This Page

자료: IRS, "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 <https://apps.irs.gov/app/picklist/list/priorFormPublication.html?value=1099-b&criteria=formNumber&submitSearch=Find>, 검색일자: 2022. 1. 17.

- 대부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중개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연방 세금 목적상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비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 의무가 발생함¹⁴⁴⁾
- Form 1099 대상 소득 중 아래의 사유를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Form 1099-B의 4번 연방소득 원천징수세(Federal income tax withheld) 항목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기재되게 되어, 추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 항목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144) IRS, "Facts to help taxpayers understand backup withholding," <https://www.irs.gov/newsroom/facts-to-help-taxpayers-understand-backup-withholding>, 검색일자: 2022. 1. 17.

- 납세자 및 지급자의 TIN이 제출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함

- 중개인 등이 Form 1099-B의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및 제출정보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함¹⁴⁵⁾
 - 30일 이내에 제출 시 양식당 최소 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도적 미제출 시 500달러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¹⁴⁶⁾
 - 또한 과태료 미납 시에 미납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형태의 이자도 부과됨¹⁴⁷⁾

바. 증권거래세 등 기타사항

- 현 미국 연방세법상 증권거래세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할 수 없음
- 적격 중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의 자본이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소득공제 등의 조세 혜택을 줌
 - Section 1202(Small Business Stock Gains Exclusion)에 따라 5년 이상 보유한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50%를 과세 면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함¹⁴⁸⁾
- 가장매매(wash sale)에 대한 자본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두어, 조세제도의 자본시장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함¹⁴⁹⁾

145) IRS, "2021 General Instructions for Certain Information Returns," pp. 19~20.

146) IRS, "Information Return Penalties," <https://www.irs.gov/payments/information-return-penalties>, 검색일자: 2022. 1. 17.

147) IRS, "Interest on Underpayments and Overpayments," <https://www.irs.gov/payments/interest-on-underpayments-and-overpayments>, 검색일자: 2022. 1. 17.

14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149)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 가장매매란 주식 또는 증권을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로 매도하고,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계약 또는 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함
- 가장매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새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손실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2. 일본

- 금융투자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 등 및 일반 주식 모두 20%의 세율과 2013년부터 2037년까지 부흥특별소득세로서 2.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금융투자자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분리과세와 확정신고 불요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자소득과 같은 20.315%(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15.315%, 지방세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원천징수되어 과세되며,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누진세율(5~45%) 및 주민세(10%)와 부흥특별소득세(기준 소득세액의 2.1%)를 적용받음
- 금융 투자자산의 소득에 대해 상장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손익의 경우 신고분리과세로 신고하게 됨
 - 신고분리과세 또한 확정 신고 절차의 일종이므로 납세자는 담당 세무서에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때 금융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이므로 분리과세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손실을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하는 경우 신고서 중 손실 신고용 신고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함

가. 자본이득 과세체계

- 일본은 양도자산에 대해서 종합과세와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 제도를 택할 수 있음

- 금융자산의 양도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경우 신고분리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공사채의 양도차익, 공모투자신탁의 양도차익 등과 같은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은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함
- 금융자산에서 파생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불을 받을 때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이에 따라 납세가 완결되는 원천분리과세의 대상임
 - 단, 국채, 지방채, 외국 국채, 공모 공사채, 상장 공사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공사채(동족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제외) 등의 일정 공사채와 공사채 투자신탁의 경우 신고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이때 신고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없음
- 금융자산에서 파생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일정 대주주 등이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하면 확정신고(종합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 및 확정신고 불요의 요건을 만족하는 배당은 확정신고 아니함을 선택할 수 있음¹⁵⁰⁾
 -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일정 대주주란 상장 주식 등 중 발행 주식 수의 3% (2010년 9월 30일 이전에는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¹⁵¹⁾
 - 확정신고 불요 요건을 만족하는 배당이란 다음의 배당임
 -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및 투자법인 및 특정 주식투자신탁, 공모증권투자신탁(공사채 투자신탁을 제외)으로부터의 금전의 분배의 경우
 -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및 투자 법인 이외의 배당 등의 경우 1회에 지불을 받은 배당 등의 금액이 10만엔 × 배당 계산기간의 월수(배당 계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계산하며, 배당 계산기간이 1월에 미치지 못하는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 ÷ 12 이하인 경우

150) 日本 国税庁,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2. 1. 19.

151) 大阪市, 「株式等の配当等所得および譲渡所得等の申告・課税方法」, <https://www.city.osaka.lg.jp/zaisei/page/0000384916.html>, 검색일자: 2022. 1. 19.

- 사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및 특정목적신탁(사모의 것에 한함)의 사채적 수익권(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의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15.315%(그 밖에 지방세 5%)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완결되는 원천분리과세의 대상임
- 선물 거래의 경우 금융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신고분리과세하여 금융소득과 달리 분류함
- 금융투자자산의 거래에 있어 특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특정 계좌란 간이 신고 계좌와 원천징수 계좌의 두 종류로서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에게 특정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그 특정 계좌 내에서의 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해 다른 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 계산은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이 실시함
- 간이신고 계좌란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에 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계좌임
 - 간이신고 계좌의 경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1년간의 거래를 금융업자가 계산하여 「연간 거래 보고서」로써 송부 후 납세자는 그것을 활용하여 번잡한 확정신고의 수속을 경감하여, 간이한 수속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음
- 원천징수 계좌란, 특정 계좌 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특정 계좌 내에서 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계좌임
 - 단, 원천징수 계좌의 거래라도 복수의 계좌가 있어 손익을 통산하고 싶은 경우나, 손실을 다음해 이후에 이월하고 싶은 경우 확정신고의 필요가 있음
- 특정 계좌와 일반 계좌의 차이점은 일반 계좌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지만, 특정 계좌는 거주자 등만이 계좌 개설 대상자에 해당됨

〈표 III-3〉 특정 계좌 및 일반 계좌의 비교

	특정 계좌 원천징수 있음	특정 계좌 원천징수 없음	일반 계좌
계좌 개설 대상자	거주자 등	거주자 등	원칙적으로 누구나 개설 가능
확정신고 필요 여부	확정신고 불필요	확정신고 필요	확정신고 필요
양도손익 계산	불필요	불필요	필요
손익 통산 등	가능	가능	가능
배우자공제 등에 미치는 영향(총소득금액에 산입)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향 없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자료: 荘内銀行, 「特定口座について」, <https://www.shonai.co.jp/sp/kojin/fuyasu/specific.html>, 검색일자: 2022. 1. 4.

나. 자본이득 과세대상의 정의 및 과세대상 행위

- 일본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토지, 차지권, 건물, 골프회원권, 특허권 등과 함께 주식 등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음
-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는 상장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사채적 수익권, 공사채, 합명, 합자회사의 지분 등을 포함함
 - 상장 주식과 같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금융상품으로는
 - ①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 ② 매장 매매 등록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
 - ③ 매장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사채
 - ④ 매장관리 종목 주식(출자 및 투자구 포함)
 - ⑤ 일본은행 출자증권
 - ⑥ 외국 금융상품 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 등
 - ⑦ 공모투자신탁(특정주식투자신탁을 제외)의 수익권
 - ⑧ 특정 투자법인의 투자구

- ⑨ 공모 특정 수익증권 발행 신탁의 수익권
- ⑩ 공모 특정 목적신탁의 사채적 수익권
- ⑪ 국채 및 지방채
- ⑫ 외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 ⑬ 회사 이외의 법인이 특별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일정한 채권 등임
- 위의 '상장 주식 등' 외의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분류하며 특별히 예시를 열거하지는 않으나 비상장 주식과 같은 주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성격 외의 수익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함
 - 이자소득에는 예적금 및 공사채의 이자 및 합동운용신탁, 공사채 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분배에 관련된 소득을 포함함
 - 배당소득에는 주주나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이나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기금이자, 투자법인으로부터의 금전의 분배 또는 투자신탁(공사채 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 등) 및 특정 수익증권 발행 신탁의 수익의 분배 등에 관련된 소득을 포함함

다. 과세대상 금액의 산정

- 주식의 양도이익의 경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비+위탁수수료 등)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상장 주식과 일반 주식은 서로 손익을 원칙적으로 통산할 수 없음
 - 양도이익 산출 시 양도소득의 금액 및 잡소득의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종목의 주식 등을 2회 이상에 걸쳐 구입하고, 그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¹⁵²⁾으로 구한 단위당 금액으로 함¹⁵³⁾

152)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는 총평균법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일본 국세청 발간자료 등 실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이동평균법에 해당함

153) 所得税法 行令 제108조

- 주식의 양도이익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는 그 수입 금액에 관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이외에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차입금의 이자, 양도를 위해 필요로 한 위탁 수수료, 관리비 등이 포함됨¹⁵⁴⁾
- 동일 특정 계좌에 있어서, 어느 종목을 일단 매각해 이익(손실)을 확정시켜, 다시 해당 종목을 같은 날에 매입하는 경우, 실제의 매도·매수의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서 간주하며, 취득가액은 직전일에서 넘어온 잔액과 당일의 모든 매입분을 평균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날의 마지막에 모든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양도손익을 계산함¹⁵⁵⁾
- 양도가액의 경우 양도자가 실제로 양도한 가액을 그 금액으로 함
- 공모투자신탁의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 신탁별 총평균법으로 한 계좌의 취득가액을 산정함
- 상장 주식 등을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을 통해 양도한 것으로 양도손실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의해 그 연분의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련된 특정 이자소득의 금액 및 배당소득의 금액(상장 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에 한정)과 손익통산이 가능함¹⁵⁶⁾
- 상장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적자의 금액을 일반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흑자의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음
- 손익통산해도 공제할 수 없는 손실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이후 3년간에 걸쳐 확정신고에 의해, 상장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금액 및 상장 주식 등에 관련된 특정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 이월공제 가능
 - 상장 주식 등에 관한 양도 손실의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우선 상장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 공제하고, 아직 공제할 수 없는 손실의 금액이 있을 때는, 상장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소득 등의 금액에서 공제함

154) 租税特別措置法 37の10⑥三

155) S M B C日興証券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qa/index.html

156)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5.htm>

- 이월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손실의 금액이 생긴 연분의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이월되는 해에 주식의 양도가 없을지라도 연속적으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 주식 등의 경우 상장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주식의 양도에 관한 흑자의 금액에 한해 손익을 통산할 수 있고, 상장 주식 등과 다르게 특정 이자 및 배당소득과 통산할 수는 없으며 손실을 이월할 수 없음¹⁵⁷⁾

- 단, 엔젤세제에 해당하는 특정 중소기업의 발행 주식을 출자 납입하여 취득한 것을 엔젤세제 적용기간 내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일정한 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 연도분의 상장주식 등에 관계되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 공제 가능함

- 또한 그 연도분의 상장주식 등에 관계되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 공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그 손실이 발생한 익년 이후 3년간 일반주식 등에 관계되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 및 상장주식 등에 관계되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으로 이월공제할 수 있음

□ 특정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내국법인의 상장주식 또는 공사채가 상장 폐지가 된 날 이후에 특정 관리주식 등 또는 특정 계좌 내 공사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에 청산종료 등의 일정한 사실이 생겼을 때는 그 주식 등의 양도가 있던 것으로 하여 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의 금액으로 간주해 그 해의 다른 상장주식 등의 양도익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음¹⁵⁸⁾

- 또한, 그 양도손실로 간주된 금액이 다른 상장주식 등의 양도이익으로부터 공제하지 못했을 경우는, 상장 주식 등과 관련되는 양도손실의 금액으로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함

- 특정 관리주식이란 상장 폐지된 날 이후 계속하여 특정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게 개설되는 특정 관리계좌와 관련된 대체계좌부에 기재 또

157)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5.htm>

158)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75.htm>

는 기록이 되거나 특정 관리계좌에 보관이 위탁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공사채

- 특정 계좌 내 공사채란 특정 계좌와 관련된 대체계좌부에 기재 또는 기록이
되거나 특정 계좌에 보관이 위탁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라. 금융기관 등의 협력 의무

- 특정 계좌(원천징수 계좌·간이신고 계좌)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간 거래 보고서가 보내지므로, 그것을 기초로 확정 신고함

마. 증권거래세 등 기타사항

-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본은 1989년 개인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고, 양도소득세
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함¹⁵⁹⁾

159) 황세운,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13호, 자본시
장연구원, 2019, p. 2.

IV. 시사점

-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현행 입법된 금융투자소득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음
 - 현행 입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1. 12. 8. 개정된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전반적 체계인 소득분류체계, 세율, 공제 등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경 시 다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1.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측면

가. 원천징수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납세자가 지정한 금융회사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하고, 집중기관이 기본공제한도에 관한 납세자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 납세자가 원천징수기간인 반기의 말일까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별 하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이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집중기관(한국금융투자협회로 지정 예정)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집중기관에서 납세자별 기본공제 통합 관리(“기본공제 분할 적용제도”)가 가능함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분할 적용제도의 장점으로는 분할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의 과다징수를 방지하고 대형금융회사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집중기관이 납세자별 기본공제 한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 자료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임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분할 적용제도의 단점으로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 부담이 크고, 여전히 과다징수 및 대형 금융회사의 거래 집중현상이 완벽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임
 -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스템 개발로 금융회사 등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 이익의 변동성이 큰 항목으로 부(-)의 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원천징수로, 다른 원천징수제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쟁점이 여전히 존재함
 - 이러한 쟁점은 크게 ① 원천징수 시 타 금융회사의 손실 통산 불가 ② 공제금액의 과세기간 동안 불변으로 반기별 손익역전 시 과다 원천징수의 문제로 금융회사의 집중 또는 납세자의 (일시적) 유동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납세자의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합계는 5천만원 이하이나 기본공제 적용 신청금액이 이익이 발생한 금융회사의 이익보다 큰 경우 전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음

〈표 IV-1〉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단위: 백만원)

	금융회사 A	금융회사 B	금융회사 C	계
1기 상반기				
주식 등 소득	40	20	(-)20	40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40	10	-	50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	10	(-)20	(-)10
원천징수금액(20% 세율)	-	2 ¹⁾	-	2

주: 1) 금융회사 B에서의 기본공제 적용 후 실현 소득(10만원)×원천징수세율(20%)=2백만원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상반기 기본공제적용 신청된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기본공제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작게 신청된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하반기에 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전체 소득과 관계없이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음

〈표 IV-2〉 기본공제적용 계좌의 손익이 역전되는 경우

(단위: 백만원)

	금융회사 A	금융회사 B	계
1기 상반기			
주식 등 소득(A)	40	10	50
기본공제신청금액	40	10	50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	-	-
원천징수금액(20% 세율)	-	-	-
2기 하반기			
주식 등 소득(B)	(-)30	30	40
주식 등 소득(누적)=(A)+(B)	10	40	50
기본공제신청금액 ¹⁾	40	10	50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	30	30
원천징수금액(20% 세율)	-	6 ²⁾	6

주: 1) 과세기간 중에는 기본공제적용 신청 금액이 유지되므로 상반기 신청금액으로 적용됨

2) 금융회사 B에서의 기본공제적용 후 실현 소득(30만원)×원천징수세율(20%)=6백만원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전체 금융투자소득의 소득금액별 금액과 기본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주요국에서 원천징수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점과 납세담보적 측면에서 원천징수라면 금융투자소득에서도 이용되는 금융회사의 계좌보유자별 인출제한 등을 적용하면 쟁점이 발생하지 않음
-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운영 현황에서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와 달라 시사점을 얻기 어려움

- 일부 국가에서는 원천징수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함
- 미국·영국은 금융투자소득(자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본은 특정계좌 이용 시에만 선택적이며 독일은 원천징수로 납세신고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와 차이가 존재함
- 독일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지급자인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원천징수세율을 초과하는 자본이득 발생 시에는 세무서장에게 직권으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¹⁶⁰⁾

〈표 IV-3〉 해외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 운영 현황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원천징수 여부	×	○ (특정계좌 이용 시 원천징수)	×	○
확정신고 필요 여부	○	△ (원칙: 신고납부, 예외: 원천징수 시 신고의무 면제)	○	×

자료: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 통합 원천징수

- 납세환경에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변동되는 조세 정책보다는 일괄적인 조세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에서의 미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160)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 금융회사 간 금융투자소득 정보 공유를 통해 중앙집중처리기관 등을 통해서 통합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음¹⁶¹⁾
 - 금융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 원천징수제도 운영을 통해, 투자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증가 및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세법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조세 측면에서 유불리를 따져 기본공제 적용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본공제 적용회사를 선택하는 시기가 반기의 말일까지이므로, 선택하지 않은 시기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잠정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과 실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의 선택에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중립적인 한 기관에 집중되게 된다면, 대형 금융회사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등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 공유에 동의한 납세자들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함
- 통합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처리기관 등에서 업무 전문성 보유 및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세청 및 개별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
 - 증권거래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의 기존 네트워크 및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예탁결제원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등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한 다른 기관을 중앙집중처리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는 예탁결제원이 정보를 근거로 각 금융기관에 사전에 정의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을 통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금융기관 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¹⁶²⁾ 등으로 잔액 조회 등이 가능한

161) 청산결제부 청산결제기획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2021. 4.

상황에서 손익 정보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동하고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금융회사 이외에 국세청이 정보를 취합하여 원천징수금액을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정보 제출 시기가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므로 이를 통합하여 원천징수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함
 - 다만, 그 정보 제출 기일이 해당 거래가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익익월 10일 이어서 적시성이 없으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부담할 세액을 대신 미리 징수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음
 -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이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및 관리 등에 관여하게 된다면 문제 발생 시, 실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책임소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분할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다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 통합 원천징수제도로 나아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2) 예비적 원천징수 후 신청에 따른 정산제도

-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쟁점은 전체 금융투자소득과 기본공제(및 이월결손금)를 통합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원천징수방식의 적용 후 손익통산, 기본공제금액 등의 전체 소득과 공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증빙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임

16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검색일자: 2022. 3. 29.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과 납세협력과 과세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 검증은 금융투자상품 정보 제출이 이루어지는 해당 반기의 익익월 10일 이후 가능할 것이며, 원천징수금액의 정산 신청·환급 등의 시스템 구축과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음

나. 신고안내

- 「금융투자소득세법」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세청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각 반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초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 즉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이 가능함
 - 카카오페이 사용자일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미사용자일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함
 - 신고안내문에는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
 - 홈택스에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신고 대상인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 및 「금융투자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안내의 장점은 금융회사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 자료를 제공받아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의 채움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임

- 현행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안내의 단점은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낼 수 없어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이며,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 안내문이 아닌 일괄적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는 점임
-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하여 장외거래 및 K-OTC외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주주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림 IV-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주식

안녕하십니까?

2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

- 2022.2.28.(월)까지

신고서 작성·제출

-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또는 전자신고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접근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전자신고 가이드 접근방법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전자신고 가이드

※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첨부서류

- 양도·취득 계약서, 필요경비 지출 관련 서류(증권거래세 등),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신고서(당해연도 중 대주주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범위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증권기업 주식등은 과세제외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코스피		상장주식		코스닥		비상장주식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원 이상	2%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1) '20년말(12월) 결산법인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20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부터 25%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임

1) 납세자 유형별 세금신고 안내문 발송

-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거래 및 보유내역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 유형별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안함
 - 신고도움 자료는 정보 제공자 입장이 아닌,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납세자 유형별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해 효율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납세자별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신고방법 등이 모두 다른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모두에게 표준적인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 신고 안내 이외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신고 안내문 수령만으로도 의문사항이 해소되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유형별 안내문의 제공이 필요함
 - 다만 유형별 신고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의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금융회사 등과 연계하여 안내문을 제작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함
 -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 신고 안내문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의 종류 및 거래방법 등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같은 종류별 신고 안내서 기본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유형은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없다면) 미신고대상, 신고납세, 신고환급,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파악된 경우로 이를 포함한 신고 안내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득금액 등을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홈택스 등에 접속해서 채움 서비스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회사 등을 통한 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미신고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개별 발송

- 비과세대상 또는 금융회사 등의 거래만 존재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미신고대상자에게도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는 방안을 제안함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기존 비과세대상이었던 금융상품 등이 과세대상에 대거 포섭되면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금융상품 보유자는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이들은 금융회사 등의 자료 제공으로 자동 신고가 완료되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에 대한 의문 및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신고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어야 함
 -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자신고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 조사 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려운 점에서 “전자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를 선택한 납세자가 가장 많았음¹⁶³⁾

〈표 IV-4〉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려운 점

2-3. 귀하는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평균값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자체가 어렵다.	3.28
2) 홈택스 화면이 복잡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3.40
3) 전자신고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항목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94
4) 전자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오류검증이 어려움)	4.06
5) 전자신고를 할 때 세법용어가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는다.	3.98
6) 전자신고 이용안내가 부족하다.	3.68

1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21, p. 128.

〈표 IV-4〉의 계속

2-3. 귀하는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평균값
7)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어렵다.(질의응답 등의 답변이 늦음)	3.75
8) 기타	
최댓값, 최솟값	4.06, 3.28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21.

- 특히 결손금도 자동으로 확정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법」과 「금융투자소득세법」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결손금 이월 공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을 통한 거래만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민원 및 문의 감소를 통해 효율적인 납세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납세협력 기관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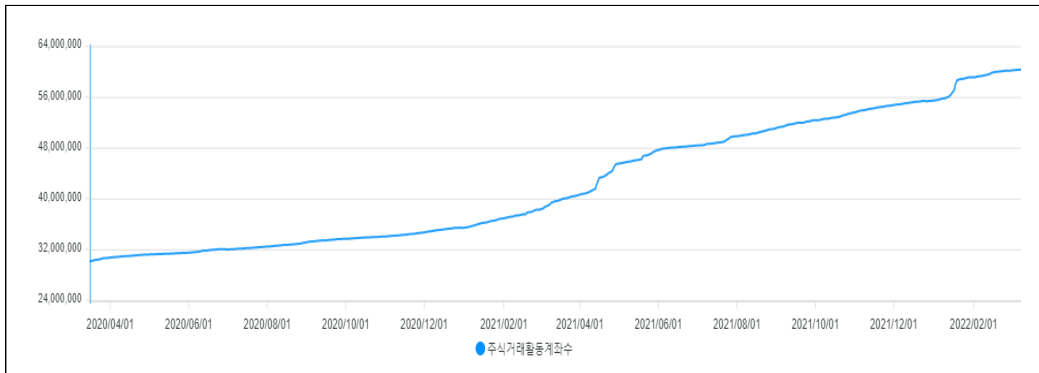
-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납세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 금융기관은 자신의 수익창출 수단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증권사는 타사의 거래내역도 증빙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러한 기조는 금융투자소득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의 신고범위에 비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신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행 신고 대행은 주로 국외 주식 신고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는 모든 (타사 계좌 포함) 금융투자자산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

므로 현행과는 투입수준 자체가 다를 것(2022년 3월 현재 주식거래활동계좌 수 약 6천만개)으로 예측됨

- 더욱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던 항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의 부여, 비과세에서 과세 전환으로 기준가격 산정의 중요성의 부각, 적격집합투자기구 등의 소득 구분 등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음

[그림 IV-2] 주식거래활동계좌 수 변화

(단위: 개)



자료: 금융투자협회, 「주식 등 통계」, <http://freesis.kofia.or.kr/>, 검색일자: 2022. 3. 29.

- 따라서 일정 부분 금융회사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 납세신고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보이나, 이전과의 투입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기관 간 경쟁에 의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보장받으려면 비례의 원칙 중 특히 목표로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월해야 하므로¹⁶⁴⁾ 침해되는 사익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에서 국세청장이 신용카드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¹⁶⁵⁾ 등의 다른 유사 사례도 존재하므로 입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4)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16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제6항

-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와 같이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해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차별적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 다만 현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사업장 제공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반론의 여지도 존재함

다.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1) 홈택스의 안내

- 전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만의 납세자 특성을 고려하여 홈택스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매매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납세자는 전산에 익숙한 반면, 매매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일부 납세자들은 전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주식 등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전산에 대한 친숙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대로 매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모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납세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금융투자소득 산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납세자가 금융회사의 소득산정내역 등의 최소한의 조력 없이 납세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소득 구분 및 산정은 그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개인납세자가 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
-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특화된 홈택스 구성이 필요함
 - 현행 양도소득세 등으로 다른 양도소득대상인 부동산 등과 함께 신고되는 항목

이 아닌 금융투자소득 분류를 홈택스 내에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됨

- 홈택스에서 채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 구분 및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납세자가 보유한 금융회사별·상품별 정보와 대사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내역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 전산에 익숙한 납세자들이 홈택스 신고 시 소득 분류·산정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입력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임
 - 특히, 하나의 지급이 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나 채권 양도에서 일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 등에서 납세자들이 채움서비스 금액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홈택스에서 이러한 부분의 상세한 안내(금융기관을 통한 안내 포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전산에도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복잡성이 높은 금융투자소득을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들은 금융회사 등의 조력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시기

- 현재 입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인데, 이러한 신고기한의 변경 고려도 필요할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의 경우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5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방이 세무행정 일정상 고충을 겪을 수 있음
 - 예정신고의 경우 2월 말과 8월 말일이 예정신고기한이기 때문에 다른 세목의 신고기한과 겹치지 않음
 - 미리채움이 가능한 주식 등의 소득에 기인하는 납세자가 대부분이지만 앞서 신고안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 자체보다는 신고내용의 적정성 우려로 많은 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세 신고기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의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기한에 자본이득을 신고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 및 납세의식 등의 환경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영국은 개인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며, 독일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신고가 면제되어 원천징수세율보다 소득세율이 낮을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함
 - 절대적 비교보다는 각국의 자본소득(금융투자소득)세제의 복잡성 수준, 납세의무자의 세무대리인 이용과 채움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과세관청의 조력 수준 등의 고려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의 개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이용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 반해,¹⁶⁶⁾ 채움서비스는 2018·2019년도에 자본소득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영국·일본 등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¹⁶⁷⁾¹⁶⁸⁾ 금융투자소득에서 채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므로 상반된 영향이 있음
 - 국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신고 건수 대비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비율은 42%(전체 8,729,744건 중 3,693,449건)이며,¹⁶⁹⁾ 미국의 현재 세무대리인 이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으나 2014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고 있음¹⁷⁰⁾
 - 그러나 새로운 세목의 도입과 소득산정의 복잡성 측면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일시적이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입법된 바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확정신고를 면제하는 등 우선 최

166) OECD, "Survey of Trends in Taxpayer Service Delivery Using New Technology," Forum on Tax Administration, February 2005, p. 59.

167) 부동산 자본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됨

168) 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Shareholder interactions: registration and filing," <https://data.rafit.org/regular.aspx?key=63164068>, 검색일자: 2022. 3. 25.

169) 통계청, 「15.3.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2005~]」, 표 참고

170) IRS, "IRS Urges Taxpayers to Choose a Tax Preparer Wisely for the Filing Season Ahead," <https://www.irs.gov/newsroom/irs-urges-taxpayers-to-choose-a-tax-preparer-wisely-for-the-filing-season-ahead>, 검색일자: 2022. 3. 28.

대한 확정신고 의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확정신고기한 자체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 말 이후로 확정신고기한을 미루는 것은 환급세액이 발생한 납세자의 세액 환급을 늦추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도입 초기 혼란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2~3개 과세기간에 걸쳐 임시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하거나, 영구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을 연장하되 환급일자를 앞당기는 방안(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같이 15일 이내)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금융투자소득 상담센터

-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세목이 도입되는 것이고, 다수의 납세자와 관련된 복잡성이 높은 세목인 만큼 별도의 국세상담센터 또는 금융회사와 연계된 상담센터 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
- 앞서 통계(그림 IV-2))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만 약 6천만개임을 감안했을 때 도입 초기에 한정해서라도 별도의 관련 상담센터 운영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담센터와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 126에 별도의 상담번호를 할당하는 것과 함께 각급 세무서에 별도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예상할 수 없었거나 각급 세무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부서를 각 지방청에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또는 금융회사 등 지원의 방안으로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상담센터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자동확정제도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 발생 시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자동 확정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입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결손금 발생 시 포함) 자동 확정 제도를 통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과세표준이 확정되어 별도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따라서 무조건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세무행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일계좌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일본의 특정 계좌제도와 같은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일세율로 과세되어 누진 계산이 불필요한 일본의 세제와 달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 특성상 신고를 면제하더라도 별도의 납부 고지서를 송부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상 고려사항이 있음

〈표 IV-5〉 일본의 특정 계좌 및 일반 계좌의 비교

	특정 계좌 (원천징수)	특정 계좌 (원천징수 없음)	일반 계좌
계좌 개설 대상자	거주자 등	거주자 등	원칙적으로 누구나 개설 가능
확정신고 필요 여부	확정신고 불필요	확정신고 필요	확정신고 필요
양도손익 계산	불필요	불필요	필요
손익통산 등	가능	가능	가능
배우자공제 등에 미치는 영향(총소득금액에 산입)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향 없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자료: 荘内銀行, 「特定口座について」, <https://www.shonai.co.jp/sp/kojin/fuyasu/specific.html>, 검색일자: 2022. 1. 4.

라. 금융투자소득세 회피 방지 대응

- 배우자 간 증여,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어 매각대금에 대한 재증여 포착이 필요함
- 현행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1천만원에서 6억원까지의 증

여재산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¹⁷¹⁾ 현행 체계에서도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는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표 IV-6〉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가 수증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국외 주식 정도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는 모든 항목에서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금융자산의 경우 기존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는 다르게 증여의 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과세회피행위의 유인이 훨씬 큼
 - 실제 금융자산의 증여는 예금의 입출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간단한 절차와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건당 1천원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주식의 계좌간 이전이 가능함

1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그림 IV-3] 키움증권 주식 대체출고 절차

1 계좌번호 [] 비밀번호 []

2 대체구분 동일 명의 대체 타인 명의 대체

하단 잔고를 확인하신 후, 출고종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종목번호 [] 종목명 []

4 대체수량 [] 주

5 입고계좌번호(위탁) [] 입고계좌명 []

6 신청

7 주식잔고 채권잔고 ELS잔고

종목명	보유량	결제잔고	매입가	매입금액	현재가	평가금액	평가손익

* 타인명의로 미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실명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절차

1. 대체단가는 결제기준단가이며, 체결기준단가로 변경하시려면 [0806]매입단가 변경화면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타인명의 대체'는 보안매체(OTP,보안카드)이용등록 고객만 처리 가능하며, 보안매체 미사용 고객은 '동일명의 대체'만 가능합니다. [OTP 안내]
3. 업무처리시간 : 오전 08:00 ~ 오후 04:00 까지 (영업일 기준, 토요일 처리 불가)
4. 입력과 동시에 유가증권 대체가 완료되며,처리후 취소가 불가하오니,입고계좌와 종목,수량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결과와 거래내역[0365]화면에서 조회 가능)
5. 대체처리 되지 않는 경우: 미수계좌 출고, 주식매수청구종목, 선물옵션계좌
6. 타인명의로 대체시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0000]

자료: 키움증권, 「계좌 간 유가증권대체」, http://download.kiwoom.com/hero3_help_new/0805.htm#a2, 검색일자: 2022. 3. 5.

□ 이러한 증여는 실제 증여가 아닌 경우로서 금융투자소득세 회피 또는 기본공제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당기 과세기간의 세액 감소 목적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한 금융투자자산을 증여하거나, 향후 이익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 주식 등의 기본공제 5천만원을 이용하기 위해 금융투자자산을 분산할 가능성이 높음
 - 증여 자체는 위법하거나 조세회피라고 할 수 없으나, 쟁점은 이러한 증여 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아니어서 매각대금을 기존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은 행위는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닌 각각의 증여행위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임
-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형태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 금융투자자산의 증여 후 또는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후) 금융투자자산의 매각대금의 실제 귀속에 대한 보다 강화된 추적이 필요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투자자산은 증여의 용이성으로 인해 빈번하고 큰 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투자자산의 증여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처음부터 현금 증여 후) 금융투자자산의 매각대금의 귀속이 본 소유자가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주식 거래가 없거나 소액인 수증자가 금융투자자산을 증여받은 다음 매각 후 증여자의 금융투자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이월과세 규정¹⁷²⁾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에서의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¹⁷³⁾이나 부동산의 이월과세 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집합투자증권과 기구,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의 배우자 이월과세와 제101조 준용규정¹⁷³⁾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에 대해 1년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음

172)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3

173)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7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리 필요성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비상장법인 등의 주식 변동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국세청에서는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추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현행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모든 주식 등의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¹⁷⁴⁾
 -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가 크지 않고, 변동이 없는 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세무조사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완벽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임
 - 미제출하거나 변동사항을 누락 제출한 경우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임¹⁷⁵⁾

〈표 IV-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구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주주	증권사로부터의 자료 제공 여부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출 대상 주주	상장	지배주주인 대주주	○	○	
		일반 대주주	×		
		이외	×	×	○
	비상장	대주주	○	×	
		소액 주주	일반	×	×
K-OTC 거래	○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174)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175)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성실신고확인서 등에 준하게 높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출의무 대상 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수준임¹⁷⁶⁾
 - 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도 포함하여, 국세청이 미리 파악하기 힘든 장외거래 등에 대한 과세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을 통한 상장법인 주식거래는 정보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쉽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음
 - 다만 영세 중소기업 등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부담이 가중되는바, 별도의 세액감면 조항 등을 신설하여, 투명한 명세서의 제출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금융투자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 외의 소득 지급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 지급자를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확대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2. 제도 측면

- 과세제도 자체는 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식별된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참고 목적으로 쟁점별로 간략하게 기술함

176)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이외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예측 거래 형태가 포함되어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음

가. 시장 간섭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항목

- 조세 부과는 의사결정에서 대체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단순한 대체효과를 넘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식별됨
 -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체효과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금융시장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일부 항목들은 대체효과가 아닌 조세절감 또는 회피를 위해 납세자들이 반응하게 되어 시장에 간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1) 기본공제

-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제는 대주주 요건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로 설정하여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매도와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행태를 가져왔음
 - 현행 소득세제에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통상적인 대주주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에 시가총액의 1%(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임
 -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종료일 한 시점에만 요건에서 제외되면 되므로, 거액의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행태를 나타낸다고 하며,¹⁷⁷⁾ 수많은 시장보고서도 매년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러한 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¹⁷⁸⁾

177) 황세운,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0.

178) 미래에셋증권, 「한국 증시, 대주주 양도세 이슈 종료에 개인 매수세 확대」, 『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실현이익이 없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기본공제 사용을 위한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여러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여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현행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규모보다는 개인별로 작은 금액이 겹치지만, 주식 등의 5천만원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반대로 연말의 누진세율 회피, 반기 원천징수 회피를 위한 손실 실현도 나타날 수 있는데, 세제로 인해 시장에 매도가 나타난다는 점은 동일함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먼저 미국의 Wash Sale, 영국의 bed and breakfasting 규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효성의 문제가 있음
 - 두 규정 모두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연말의 손실실현 후 재매입에 대한 미인정 규정이나, 실제 거래를 부인하기 위한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다른 방안으로는 (거래비용 등을 고려 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이월하여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아도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기본공제 이월이라는 조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이러한 공제를 이월하기 위해 기존 계좌가 아닌 신규 계좌를 통한 미실현 이익을 창출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2) 이월결손금 공제

- 이월결손금 공제가 주식 등의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부터 우선 적용으로 인해 250만원 대상 소득에서는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연말에 이익을 실현하는 유인이 발생하므로, 앞서 언급한 기본공제의 이월에 더하여 결손금을 구분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전망], 2021. 12. 29.; 하나금융투자, 「개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점검」, 2020. 10. 20.; 신한금융투자,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 2018. 12. 11. 등

- 이월된 결손금은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 소득부터 공제되므로, 차기에 5천만원 공제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에 250만원 대상 소득에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연말에 이익을 실현하는 대응이 나타날 수 있음
 - 당기의 결손금이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에 당기 결손금과 기본공제를 고려하여 이익실현이 이루어져 시장을 간섭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이익실현은 향후 5천만원 기본공제 사용을 위해 해당 분류 이익은 보유하고 250만원 기본공제 대상의 이익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의 대응으로 소득공제금액 차이(5천만원 v. 250만원)가 크게 발생하는 동안은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결손금을 구분 관리하고 구분 공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3) 주식 장외거래

-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주식의 장외거래 중 장내거래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법」상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장외거래라고 하더라도 비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의제취득가액이 인정됨
 - 그러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도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교환·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발생하는 주식매수청구권¹⁷⁹⁾ 행사는 5천만원 기본공제와 의제취득가액에서도 제외되어 완전한 장외거래로 간주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완전자회사가 된 기존 주주의 과세이연 특례가 존재하나¹⁸⁰⁾ 여기서 논하고 있는 기본공제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혜택 미부여는 개인주주들의 조세에 따른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5천만원 공제 대상과 의제취득가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18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해당 매매는 법률로 정해진 주주의 권리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주 주 등이 주식매수청권 권리행사 여부 판단 시, 행사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과세로 인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현행 소득세에서 장외거래로 보아 과세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요건은 행위 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이 금융투자소득세 전환 시 과세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없어¹⁸¹⁾ 이론적으로도 쟁점이 되지 않음

4) 신주인수권

- 상장된 신주인수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으로 분류하여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식ELW·개별 파생상품이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과세와 형평성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 신주인수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의 목적으로 지분증권으로 분류하여 상장된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주식 등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이의 경제적 실질은 주식ELW, 개별 파생상품과 거의 유사한 데 반해, 성격은 동일한 비분리형 BW를 포함하여 해당 금융상품 모두 250만원 기본공제 대상소득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반함
 - 따라서 조세는 경제적 실질을 더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신주인수권은 「자본시장법」 분류와는 달리 주식 등이 아닌 다른 분류(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의제취득가액

-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되지 않는 상품 등에 대해 2022년 종가 또는 관련 비과세 기준가격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의제취득가액 적용이 필요해 보임
 - 현행 소득세 비과세를 고려하여 주식 등은 2022년 종료일의 종가, 주식형 ETF

181) 금융투자소득세 전환 시점에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은 단지 상장법인의 주식일 뿐임

는 기준가격에서 과표기준가격 증분 등을 차감한 금액 등으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비과세 기간 동안의 이익이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현행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형평성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2022년 중에 이러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미실현이익인 경우 매도로 대응하게 됨
 - 이러한 부진정소급과세가 비록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비과세 또는 비과세 부분이 있었으나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전체 이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의 대주주 보유분, (투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비상장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환매·해산 등, 개별종목 ELW, 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에 근거한 국내 장내파생상품, 스왑 등임
- 반대로 기존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상품은 과세되던 부분의 반영이 필요함
 - 이러한 상품은 대주주 보유 이외의 상장 투자회사가 전체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실제 상장 투자회사는 확인되지 않아 이론적으로만의 쟁점일 수 있음

나. 비과세에서 과세 전환으로 인한 세제 개선 필요항목

1) 이월과세의 의제취득가액 적용

-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규정에서 의제취득가액 적용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데 이월과세와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무관하므로 의제취득가액 적용이 필요해 보임
 - 이월과세 법령에서는 필요경비 산정 시 의제취득가액 규정¹⁸²⁾을 준용하지 않고 있음
 - 이월과세의 규정은 배우자 증여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182)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12 제4항

것이므로,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과는 무관한 성격이므로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2) 집합투자기구 등의 소득금액 산정 관련

-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 및 파생결합증권 등의 소득금액 산정에서 기준가격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 소득세에서는 과세와 비과세의 소득 구분 필요성으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사용하였지만, 금융투자소득에서는 비과세 부분이 과세로 전환되므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합리적임
 - 대부분의 경우 기준가격이 시가를 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괴리율, 상장되지 않은 기초자산 등)의 고려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이의 시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가격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집합투자증권·기구의 환매 등에서 주식형 ETF와 상장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기준 산정에서 과세유보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쟁점의 소지가 있음
 - 주식형 ETF와 상장 투자회사의 환매 등에서 실제 거래금액으로 산정되는 장내 매매 이외의 경우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데 과세유보금의 가감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부분이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주식형 ETF 등이 이익을 모두 분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분배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 해당 부분 만큼의 비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아래의 사례에서 실제 이익의 순현금흐름은 $560(=1,500-1,000+60)$ 이나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분배 60과 환매 등의 이익 460인 총 520임
 - 더구나 상장 투자회사의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되기 위해 연 1회 이상 배당가능이익 전체 배당 요건이 있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이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표 IV-8〉 주식형 ETF의 경우

기간	기준가격 ¹⁾	분배	유보	과세소득금액		실제 현금흐름
				분배	환매 등	
1기초 매수	1,000					-1,000
1기말 결산·분배 전	1,100	60	40	60		+60
1기말 결산·분배 후	1,040					
2기말 청산	1,500				460 (=1,500-1,040)	+1,500
계				520 (=60+460)		560 (1,500+60-1,000)

주: 1) 계산의 편의상 수수료 등과 재투자로 인한 기준가격과 수익권 수량 조정은 없다고 가정함
자료: 저자 작성

- 다만, 주식형 ETF가 해지·청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 상장 투자회사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유보금은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현 실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이의 남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에서 환매 등의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은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위의 사례에서 유보금 40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으나 다른 집합투자증권·기구의 이익과 차별적(과세유보금 가감)이며 금융투자소득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주식형 ETF 등의 별도 구분이 필요한지 여부 및 도관성을 나타내는 금융투자소득의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상장주식 등에 대한 비과세요건으로 인해 주식형 ETF나 상장 투자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나, 과세 전환으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제도의 복잡성만 높이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분류체계가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가 유보할 수 있는 소득 이외에는 전부 분배하거나 재투자로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법」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와 차이가 발생하는데(〈표 II-14〉 참조), 이를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상 도관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가평가가 집합투자재산평가이익을 분배해야 하나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법인세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언급이 없음

- 상장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등의 장외 양도 시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조세회피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 실제 매매가격으로 적용하고 이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론상으로도 장외 매매라고 해서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거래금액을 인정하고 이 가격이 시가 여부에 따라 기준가격 등을 평가금액으로 증여세 과세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외에 상장 집합투자증권이나 상장지수증권은 기준가격과는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증여세 과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만으로 지속적인 증여가 가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표 IV-9〉), 괴리율이 높은 양(+)¹⁸³⁾의 비율인 경우 거래소의 거래가격(1,200)이 아닌 기준가격¹⁸³⁾(1,050)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양도하면, 양수인은 괴리율¹⁸⁴⁾만큼의 이익(150)을 증여받게 되며 향후 처분 시 증여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됨
 - 이러한 거래는 거래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가 존재하며 거래가 손쉽고 거래비용이 거의 없으며 평가가 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LP가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의 복잡성이나 거래비용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다른 자산(예, 부동산)과는 달리 지속적인 이

183) 기준가격(IV, NAV)도 공고일 직전일이 기준이어서 당일(intraday)의 변동(IIV, INAV)이 반영되지 않음

184) 각주 183과 같이 괴리율은 당일(intraday)을 반영하나 편의상 기준가격과의 차이로 지칭함

전이 가능하며, 「상증세법」상 평가 이전·이후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불확실성이 있는 주식과는 차별적인 특성이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증여재산 평가가 기준가격으로 규정되어,¹⁸⁵⁾ 이를 전제로 하면 집합투자증권의 장외거래 경우에도 거래소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준용 규정에서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도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소의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하는 규정¹⁸⁶⁾이 필요함

〈표 IV-9〉 주식형 ETF의 장외매도 시 증여세 회피

기간	기준가격	(장내) 거래가격	과리율	양도자			양수자		
				이전 금액	과세 소득	현금 흐름	양수 자산 가치	과세 소득 (금투)	현금 흐름
매수시점	1,000	1,005	5%			-1,000			
장외양도	1,050	1,200	14%	1,050	(금투) 50	+1,050			-1,050
(양수자) 즉시 장내매도							1,200	(금투) 150	+1,200
동일한 거래에 대해 거래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규정 시									
매수시점	1,000	1,005	5%			-1,000			
장외양도	1,050	1,200	14%	1,100	(금투) 50	+1,050			-1,050
(양수자) 즉시 장내매도 ²⁾								1,200	(금투) 150 ¹⁾

주: 1. 계산의 편의상 수수료 등은 없다고 가정하고 규모가 클수록 증여공제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고려하지 않음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준용규정에 따라 150만큼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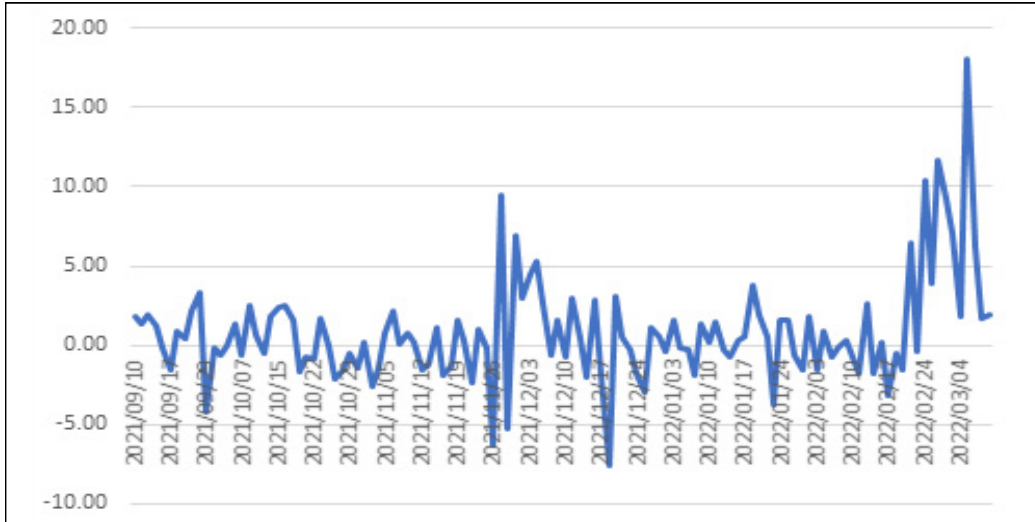
2) 실질적으로 증여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정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어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자료: 저자 작성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그러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동일 ETF나 ETN 등의 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상황은 달라짐

186)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7조의27 및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67조 제7항

[그림 IV-4]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의 괴리율 추이(2021. 9.~2022. 3.)



자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통계 그림으로 재구성

3) 비적격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적격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을 배당소득세액공제 (gross-up)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도 동일한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나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는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적격 집합투자기구로의 유인 등의 정책 목적일 수도 있음

4) 감면액 산정 시 기본공제의 차감

-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기본공제를 감면대상 소득에서 모두 차감하도록 산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공제는 감면·비감면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므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현행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에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감면은 소득금액에서 이에 따라 차감하는 형태로 규정하여, 감면 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 취지와도 일관성이 없음

- 다만, 특별히 감면 소득에서만 공제할 사유가 없어 정책적 목적일 수도 있음

5)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에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되는데 이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요건이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상장법인 주식으로 3분의 2 이상을 집합투자재산에 구성하면 되는데,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의 레버리지 성격을 고려할 때 요건이 너무 낮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3분의 1을 장내파생상품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는 직접취득하였으면 250만원 기본공제 대상으로 형평성에 반할 수 있음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 분류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상장법인 주식의 비율을 높이거나 공모 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소득별로 금융투자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이 제시될 수 있음
- 다만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규제 목적상 3분의 2라는 상장주식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시장 견해도 있으나, 규제와 과세 목적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6) 전환증권 등의 과세시기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주식 전환 시 과세 여부, 소득분류 및 과세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현재 전환증권의 전환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채권의 양도 등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세 여부부터 소득금액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전환 시 등에 채권 등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7) 상장폐지 또는 청산 시 결손금 인정

- 주식 등의 상장폐지 이후 회사의 청산 시 결손금 인정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에는 배당소득 분류만 존재해서 결손금 쟁점이 없었으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일정 부분까지는 결손금 인정이 필요할 수 있음

8) 국외금융투자자산

- 국외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을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 보아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규정이 있는데 취지나 다른 과세와 상충되어 보이므로 이 규정의 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기존에는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나타나고 있음
 - 5년의 계속 거주 요건은 금융상품 양도소득이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로 정해진 조세조약을 고려할 때 이중비과세 가능성이 존재하며, 거소·주소를 일부 기간만 국외에 두어도 비과세되는 형태가 나타남
 -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3가지 분류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집합투자증권과 기구,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은 국외자산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9) 공매도(대주거래)

- 「금융투자소득세법」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해당 시 소득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양도 등의 행위에 대주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음

- 현행 「소득세법」에서의 체계를 적용할 경우 공매도 거래의 실질인 차입후양도와 매입후상환의 차익이 모두 과세되지 않음
 - 반대로 주식을 차입하여 양도하지 않고 다시 상환하는 경우, 상환을 양도로 차입을 취득으로 보아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과세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당부분 비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공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쟁점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나, 비과세대상이 과세대상으로 포섭되면서 개인의 공매도 차익에 대한 쟁점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다. 건강보험료 부과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될 수 있어 새로운 세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거주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 직장가입자 역시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기존 이자 및 배당소득과 유사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97등급의 점수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됨
 - 직장가입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 평가점수가 부가되는 항목인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기준 반영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체계 검토가 요구됨
 -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월세 소득과 유사하게 60등급의 점수가 부과된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부담은 적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분류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마찬가지로 필요함

〈표 IV-10〉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소득 기준	보수	보수 × 요율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소득 × 평가율 × 요율	2,000만원 초과 소득 × 평가율 × 요율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소득평가율		보험료부과점수			
		구분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	구분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100%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	97등급			
근로, 연금소득	30%		금융투자소득	-	97등급 여지 있음		
금융투자소득	-	100% 여지 있음					
재산기준	해당없음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구분	보험료부과점수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60등급		
				금융투자소득	-	60등급 여지 있음	

주: 보수외소득 공제 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조정은 아니나 보고서 작성일인 3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추후에 변동될 여지가 있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이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000m01.do>, 검색 일자: 2022. 3. 16.을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과 달리 분류과세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 및 이월결손금 반영 등 타 소득과 차이가 존재하여 전반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검토되어야 함

-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항목이 없어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달리,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목적으로 기본공제를 사용하기 위한 연말 집중 매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기존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손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반영된 과세표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법」 시행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소득의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금융투자소득이 보수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보수외소득이 적게 산정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여 보완책이 필요함
 - 전체 소득은 동일한데 소득의 분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특정 소득자에게만 보험료 혜택을 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다수의 납세자에게 세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금액 이하 건강보험료 면제 및 일정한 의무 부과에 따른 경감규정 적용 등의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1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면제됨
 - 현재는 면제 중이나 조항 삭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서 및 구청의 협력의무 수행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료 경감비율 역시 최대 80%까지 적용하여 납세자의 투명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고 있음

〈표 IV-11〉 이자/배당/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구분	소득금액 기준	감면규정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1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면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경감규정 있음)

주: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간주임대료 부분은 따로 기술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6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규정에 의하여, 임대등록을 한 주택의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40%, 80% 경감되는 규정이 존재함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문헌자료〉

관계부처 합동,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 6. 25.

국세청, 『2021 개정세법 해설』, 20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 4. 29.

송병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20. 11.

오윤·임동원·문성훈, 「공매도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21. 12.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청산결제부 청산결제기획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2021.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_____,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21.

황세운,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13호, 자본시장연구원, 2019.

_____,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0.

OECD, “Survey of Trends in Taxpayer Service Delivery Using New Technology,” Forum on Tax Administration, February 2005, p. 59.

〈자료〉

미래에셋증권, 「한국 증시, 대주주 양도세 이슈 종료에 개인 매수세 확대」, 『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 2021. 12. 29.

하나금융투자, 「개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점검」, 2020. 10. 20.

신한금융투자,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 2018. 12. 11.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25.

IRS, “2021 General Instructions for Certain Information Returns,” p. 26.

〈법령 및 규정〉

한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미국

IRC(Internal Revenue Code)

일본

「所得税法 行令」

「租税特別措置法」

〈판례〉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60 결정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온라인 자료〉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통계청, <https://kostat.go.kr>

미래에셋증권, <https://www.miraeasset.co.kr>

하나금융투자, <https://www.hanaw.com>

신한금융투자, <http://www.shinhaninvest.com>

한국거래소, <https://www.krx.co.kr>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오사카시청, <https://www.city.osaka.lg.jp/zaisei/page/0000384916.html>

SMB C日興証券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qa/index.html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이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000m01.do>, 검색일자: 2022. 3. 16.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검색일자: 2022. 3. 29.

금융투자협회, 「주식 등 통계」, <http://freesis.kofia.or.kr/>, 검색일자: 2022. 3. 29.

- 삼일아이닷컴,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소개합니다」, http://www.samili.com/weekly/weekly_view.asp?idx_no=37480, 검색일자: 2021. 10. 1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2&ccfNo=3&cciNo=2&cnpClsNo=2#lnbShow>, 검색일자: 2022. 3. 9.
- 키움증권, 「계좌간유가증권대체」, http://download.kiwoom.com/hero3_help_new/0805.htm#a2, 검색일자: 2022. 3. 5.
- 荘内銀行, 「特定口座について」, <https://www.shonai.co.jp/sp/kojin/fuyasu/specific.html>, 검색일자: 2022. 1. 4.
- 日本 国税庁,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2. 1. 19.
- 大阪市, 「株式等の配当等所得および譲渡所得等の申告・課税方法」, <https://www.city.osaka.lg.jp/zaisei/page/0000384916.html>, 검색일자: 2022. 1. 19.
- 荘内銀行, 「特定口座について」, <https://www.shonai.co.jp/sp/kojin/fuyasu/specific.html>, 검색일자: 2022. 1. 4.
- IBFD, “Investment incom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us_s_1.&refresh=1641878461868%23gthb_us_s_1.6., 검색일자: 2022. 1. 11.
- IRS, “Find out if Net Investment Income Tax applies to you,” <https://www.irs.gov/individuals/net-investment-income-tax>, 검색일자: 2022. 1. 12.
- IRS, “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 <https://apps.irs.gov/app/picklist/list/priorFormPublication.html?value=1099-b&criteria=formNumber&submitSearch=Find>, 검색일자: 2022. 1. 17.
- IRS, “Facts to help taxpayers understand backup withholding,” <https://www.irs.gov/newsroom/facts-to-help-taxpayers-understand-backup-withholding>, 검색일자: 2022. 1. 17.
- IRS, “Information Return Penalties,” <https://www.irs.gov/payments/information-return-penalties>, 검색일자: 2022. 1. 17.

- IRS, “Interest on Underpayments and Overpayments,” <https://www.irs.gov/payments/interest-on-underpayments-and-overpayments>, 검색일자: 2022. 1. 17.
- IRS, “IRS Urges Taxpayers to Choose a Tax Preparer Wisely for the Filing Season Ahead,” <https://www.irs.gov/newsroom/irs-urges-taxpayers-to-choose-a-tax-preparer-wisely-for-the-filing-season-ahead>, 검색일자: 2022. 3. 28.
- 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Shareholder interactions: registration and filing,” <https://data.rafit.org/regular.aspx?key=63164068>, 검색일자: 2022. 3. 25.

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발 행 2022년 3월 31일
저 자 정훈·권순오·이미현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일지사 044-865-6971
I S B N 979-11-6655-12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